

2009-31 | 책임연구보고서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2009-31 | 책임연구보고서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책임연구관 김 윤 영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가. 연구의 범위	3
나. 연구의 방법	3
II. 북한의 범죄 개념과 형벌	6
1. 범죄의 개념과 유형	6
가. 범죄의 개념	6
나. 범죄의 유형	7
2. 형벌의 본질과 유형	18
가. 형벌의 본질	18
나. 형벌의 유형	18
III. 북한의 범죄 실태 분석	27
1. 정치범죄	27
가. 반체제 사건	28
나. 쿠데타 사건	31
다. 반김일성·김정일 전단 및 구호 사건	33
2. 일반범죄	34
가. 절도범죄	35
나. 청소년 범죄	36

다. 성범죄	39
라. 위조 화폐	40
마. 마약범죄	41
바. 사회주의 문화 침해 범죄	43
사. 권력형 범죄	47
아. 병역비리 죄	51
IV. 북한 보안(경찰)기관의 범죄대책	53
1. 보안기관의 범죄단속	53
가. 범죄단속 포고령과 지시	53
나. 범죄단속 기구	61
2. 보안기관의 주민통제 사업	68
가. 정치사상 사업	68
나. 주민요해사업	70
다. 주민성분 조사사업	70
라. 교화사업	74
V. 결론	82
【참고 문헌】	84

표 목차

표 2-1 반국가범죄	9
표 2-2 반민족범죄	10
표 2-3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11
표 2-4 북한 형벌의 변화	19
표 2-5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범죄	22
표 2-6 형사소송법상 사회적 교양처분	25
표 3-1 자유청년동지회 성명	30
표 3-2 여권발급 뇌물 액수	58
표 4-1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 포고령	54
표 4-2 인민보안성 포고문	56
표 4-3 주민성분 조사사업	71
표 4-4 3계층 51개 부류 분류표	72
표 4-5 북한의 신주민 성분분류	73
표 4-6 범죄유형별 구금시설	76
표 4-6 귀하께서 노동단련대 이상의 구금시설에 구금된 적이 있습니까?	80
표 4-7 귀하께서 체포되어 결과적으로 노동단련대 이상을 벌을 받았다면, 재판절차를 거쳤습니까?	80

그림 목차

그림 1 반체제 구호 사진	29
그림 2 위변조 지폐	40
그림 3 반체제 구호 사진	59
그림 4 함북 회령 전거리 교화소(제12교화소)	77
그림 5 농포집결소	81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유일체제의 안정을 위해 ‘수령에 대한 충실성’, ‘전체를 위한 희생’, ‘끝없는 혁명적 투쟁심’을 공산주의의 ‘덕목’으로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집단주의 조직생활과 체계적인 정치·사상적 교화를 강화하여 외형상 아무런 모순이 없는 사회모습을 부각시켜 왔다.¹⁾

그러나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과 김일성의 사망(1994) 그리고 극심한 경제난(식량난)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개인주의가 확산되어 주민들의 사회일탈현상을 증가시키고 있다. 즉, 북한에 상주했던 외교관, 방북자나 여행자의 증언, 당·정간부의 ‘사업작품’에 대한 비판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북한사회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병리현상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탈북자들의²⁾ 진술에 따르면, 북한사회 역시 절도, 폭력, 성범죄, 부정부패 등이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주민들은 탄광이나 건설, 농업 등 힘든 일을 회피하며 부수입이 많은 점원, 운전사, 식당종업원 등 서비스 업종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은 범죄발생 원인을 부르주아 의식의 잔재와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오는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와 같은 나쁜 영향력 때문이라고 강변하며, 그 책임을 체제외적인³⁾ 요인으로 전가시키는 한편, ‘보안(경찰)기관’⁴⁾은 범죄단속 포고령과 지

* 이 보고서는 아시아교정포럼·한국행정학회 공동학술대회(『북한사회의 이해: 범죄와 교정』)에서 필자가 발표(2009.6.11)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북한의 종래 주장에 따르면 사회일탈행위는 소수의 반동계급이 인민대중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며, ‘공산주의 미풍’이 꽃피어 나고 ‘혁명적 의리’로 일심단결된 ‘사회주의 대가정’인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권영경 외, 『북한이해 2000』,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0, 361-362면).

2) 1990년대 식량난 해결을 위해 탈북을 시작했던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은 2009년 6월말 현재 1만 6513명이다.

시 등을 통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당국은 ‘계급으로부터 해방’된 ‘범죄 없는 사회주의 체제’라는 이유로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통계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 역시 범죄사건이나 사고·사건을 다루지 않고 있다. 범죄가 발생한다고 해도 폐쇄된 사회로 인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 그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⁵⁾ 따라서 북한의 범죄와 관련한 연구는 자료수집의 태생적 한계와 전문가들의 관심 부족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연구조차도 북한의 형법상 범죄와 형벌절차, 범죄자의 처벌담당기관과 수용시설, 사법제도의 운용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⁶⁾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기존연구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범죄대책을⁷⁾ 사례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남북한 통일 전후 북한지역의 치안확보를 위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 선행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
- 3) 공산주의 사회의 이론적 출발점은 범죄 없는 사회이다. 그것의 사회경제적 토대는 바로 계급 없는 사회다. 사회적 모순의 원천인 계급현상으로부터 해방된 사회에서 범죄의 존재 그 자체는 공산주의 사회의 규범성에 대한 강한 이론적, 경험적 부정이다. 범죄의 집단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계급 없는 사회 자체로부터 소외된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의 소외를 설명할 아무런 이론이 공산주의에는 없다. 따라서 범죄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공산주의 범죄학자들은 공산주의 체제외적인 요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박원홍, “북한주민의 이탈현상과 부조리 실태 연구”, 2000, 명지대석사학위논문, 4면).
- 4) 북한의 인민보안성은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되며, 산하에 도·직할시의 인민보안국(지방경찰청), 시·군·구역의 인민보안서(경찰서), 리·동의 인민보안소(파출소)가 있다. 인민보안성은 보편적인 경찰업무인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치안질서의 유지 기능 보다는 수령과 당을 ‘결사옹위보위’하는 것을 제1차적 임무로 하고, 인민보안성은 부대와 보안 부문으로 구분하는데, 부대부문 근무자를 ‘경비대 군인’, 보안부문 근무자를 ‘보안원’으로 부른다.
- 5) 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경찰학연구』, 제7권 제3호, 용인: 경찰대학, 2007), 72면.
- 6)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서울: 통일연구원, 2005);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동향과 전망(2005년도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서울: 법제처, 2005); 최인섭, “북한의 일반범죄에 관한 예비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9』,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1992); 기광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서울: 형사정책연구원, 1993);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서울: 통일연구원, 2003); 정영철 외,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서울: 한국방송공사남북교류협력팀, 2005) 등을 들 수 있다.
- 7) 인민보안성 ‘안전사업 1부’ 소속 ‘감찰지도국(1국)’은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포고령과 지시내용 전과 및 이행실태 확인, 각종 ‘그루빠(소조)’ 등을 지도·감독한다.

점에서 그 의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지난 날 북한사회의 범죄 실상은 단편적인 첩보나 정보에 근거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탈북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증언에 의해 범죄 실상이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1990년대의 경제난 등 사회 변혁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거나 빈도가 급증한 범죄였다.⁸⁾

북한정권의 수립과 함께 주민들의 사회일탈 등 범죄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왔다는 점에서, 북한정권 수립이후 현재까지의 광범위한 기간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극단적인 폐쇄성으로 인하여 범죄 실태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1990년대 이전 시기의 범죄 실상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시공간(時空間)을 대상으로 북한 내 범죄 실태와 대책을 사례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나. 연구의 방법

첫째, 북한의 범죄발생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접근방법(historical approach)에⁹⁾ 주목하고자 한다. 현존하는 북한사회의 모든 것이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역사를 떠나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등에 대한 해답 역시 북한의

8) 북한의 범죄는 체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을 때는 미미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9) 역사적 접근방법이란 특정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사건·기관·제도·정책 등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파악·설명하는 접근 방법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연구의 대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한 연구는 일종의 사례연구라 할 수 있다 (<http://terms.naver.com/item.php?d1id=8&docid=41>, 2006년 4월 19일 검색).

역사 속에서 찾아야만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¹⁰⁾

둘째, 북한에서 발생하는 범죄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자원이 문헌이라는 점에서 문헌연구(文獻研究)¹¹⁾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의 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문헌 중심의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은 자유로운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폐쇄적인 사회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연구자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헌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북한의 범죄단속 포고령과 김정일 교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¹²⁾ 등 북한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문헌과 함께 탈북자들을¹³⁾ 대상으로 조사한 통일부, 정보기관,¹⁴⁾ 통일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문헌, 인터넷 자료 등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영역에서 축적된 선행연구¹⁵⁾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할 것이다. 특히 2004년 북한의 개정형법은 정치범죄(‘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 일반범죄(경

10) 심지연, “북한연구에 대한 역사적 접근”(『북한연구방법론』, 도서출판 한울, 2003), 239-240면 참조.

11) 역사적 시간적 조건의 틀 속에서 북한을 연구하기 위한 역사적 연구방법(historical method)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발전론적 접근법과 이데올로기를 중시한 문헌접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상완, 『학술정보 교류 방안: 북한의 학술정보 유통현황 및 교류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1.9.25, 4면).

12)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평양: 법률출판사 2004), 2004.8.25.

13) 탈북자들을 통해서도 북한사회의 범죄 실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과거의 경우 탈북자들의 회소성으로 인해 그들 자신의 정보가치를 높이하고자 북한사회 전반을 대변할 수 있다는 식의 주관적이거나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어 정보의 한계성이 내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 통로나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그들에 대한 연구도 다양화되어 연구 성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에 있다.

14) 정보기관은 인민보안성 전직요원 탈북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가 있다.

15)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서울: 통일연구원, 2003); 김현 외, 『2006 북한인권백서』(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06); 이재원 외, 『2008 북한인권백서』(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08); 데이빗 호크/ 이재광 역, 『감춰진 수용소』(서울: 시대정신, 2003) 등은 탈북자들의 증언,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술된 연구서이다. 이외에 탈북자들이 직접 체험한 내용을 엮은 권혁의 『고난의 강행군』(1999), 김승철의 『북한동포들의 생활문화양식과 마지막 희망』(2000), 강철환의 『수용소의 노래』, 황만유의 『반역자의 땅』, 김옥애의 『시집 죽사발 소동』(2004) 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상 즉,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오늘의 북한소식)나 데일리 NK 등은 다양한 범죄양상에 대한 진술 내용들을 게재하고 있다.

제범죄, 문화범죄, 행정질서범죄, 공동생활침해범죄, 생명·재산범죄)로 대별하여 범죄자 처벌절차나 형사소송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당국이 북한사회 내에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북한의 범죄 실상을 직간접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급증하는 탈북자들의 진술을 통해 북한사회의 범죄 실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북한사회에서 생활했던 다양한 계층의 탈북자들과 면접을 통해 범죄 실태의 단초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¹⁶⁾ 과거의 경우 탈북자들의 회소성으로 인해 그들 자신의 정보가치를 높이고자 북한 사회전반을 대변할 수 있다는 식의 주관적이거나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어 정보의 한계성이 내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 통로나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이들에 대한 연구도 다양화되어 연구 성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에 있다. 현실적으로 탈북자들 중에서 치안을 담당했던 보안원(경찰) 출신자들과 면담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그들의 진술과정을 통해 획득한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접근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넷째, 이 논문은 북한의 범죄개념과 유형 그리고 형사법제상 형벌의 본질과 유형을 살펴본 다음, 북한의 범죄 실태를 정치범죄(반체제, 쿠데타, 반김일성·김정일 비난)와 일반범죄(절도범죄, 청소년 범죄, 성범죄, 위조 화폐, 자본주의 문화 반입 및 유포죄, 도박과 미신, 문화재 밀매, 마약범죄, 권력형 범죄, 병역비리 죄 등)로 대별하여 사례 중심으로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북한 경찰의 범죄 대책과 범죄 전망을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전술한 내용을 총평할 것이다.

16)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 역시 그들의 거주지나 직업 등과 관련된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의식구조와 가치관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접근 방법과 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II. 북한의 범죄 개념과 형벌

1. 범죄의 개념과 유형

가. 범죄의 개념

북한은 형법상 범죄의 개념에 대한 기본 인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형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제정 형법(1950.3.3) 제7조에서는 ‘범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로 규정했으나, 1974년 형법에서는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¹⁷⁾로 개정하였다.

1987년 개정형법부터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¹⁸⁾라고 하여 보호의 객체가 종래의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에서 ‘국가주권과 법질서’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범죄개념이 정치적 측면에서 형사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주권의 침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2004년 개정형법(제1조)은 기존형법과는 달리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형법 제1조)라는 정치에 대한 법의 기능이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어 형사처리가 정치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한계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의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17) 김근식, 『형법학 1』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83면.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789면.

19)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34면.

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20)라 할 수 있다.

나. 범죄의 유형

북한은 범죄를 정치범죄와²¹⁾ 일반범죄로²²⁾ 대별하고 있는데, 일반범죄는 사상교양과 준법교양을 통한 개조의 대상이지만, 정치범죄는 철저한 진압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²³⁾

1) 정치범죄

가) 정치범죄의 개념

북한은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거나 와해시키려는 행위를 정치범죄로 규정하고, 정치범에 대한 형사처리는 형법에 근거하고 있다. 2004년 개정형법 이전에는 정치범을 '반혁명범죄'나 '반국가범죄'로²⁴⁾ 규정하는 등 정치범죄의 범위를 '반혁명분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 '적대분자' 등으로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정적(政敵)을 제거하는데 이용하였다. 그러나 2004년 개정형법(제3장

20) 2004년 개정형법 제10조는 범죄개념을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1) 북한은 정치범을 “반혁명적이며 반국가적 성격을 띤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조선말대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210면).

22) 북한은 일반범죄를 “국가사회제도에 대한 적대적의사가 없이 국가와 사회,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위의 사전, 1716면). 북한은 일반범죄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소위 착취제도를 복구하려는 반혁명적대분자들에 의해 감행되는 반혁명범죄(반국가범죄)와는 달리 낡은 사상 잔재에 깊이 물들어 있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로서 어디까지나 그들 근로자들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403-404면).

23) 북한은 정치범죄와 일반범죄의 범죄발생 원인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5, 34면).

24) 1980년대 북한은 반혁명범죄를 정치범죄로 규정하여 철저히 탄압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은 제1차 개정형법에서 반혁명범죄(1974.12.19)를 보충한 후 2차 개정(1987)에서 ‘반국가범죄’로 용어를 수정하고, 2004년 개정형법에서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로 개칭하였다.

1-3절)은 ‘반국가²⁵⁾ 및 반민족 범죄’²⁶⁾ 규정하여 정치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중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 사형이나 무기로동교화형²⁷⁾ 및 재산몰수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 말하는 정치범은 “반혁명적이며 반국가적 성격을 띤 범죄자”²⁸⁾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정치범죄를 ‘주체의 혁명위업’을 달성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개조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 정치범죄의 분류

2004년 개정형법에 규정된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제3장 1-3절)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²⁹⁾

(1) 반국가 범죄

개정형법(2004) 제3장(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1절(반국가범죄)에서는 반국가적 목적의 정변·폭동·시위·습격행위(제59조)와 조국배반의 투항, 변절, 비밀누설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제62조, 제63조)을 신설하고, 선전선동행위의 구성요건적 행위 모습을 완화하여(제61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그 법정형(法定刑)을 상향조정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동 개정형법은 종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국가전복을 위한 ‘무장폭동’뿐만 아니라 정변, 폭동, 시위, 습격행위도 처벌하고 그 법정형의 상한을 삭제하였다.

25) 반국가범죄에는 국가전복음모죄(제59조), 테러죄(제60조), 반국가 선전·선동죄(제61조), 조국 반역죄(제62조), 간첩죄(제63조), 파괴암해죄(제64조), 무장간첩 및 대외관계단절사혹죄(제65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제66조)가 있다.

26) 반민족범죄에는 민족반역죄(제67조), 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제68조), 조선민족 적대죄(제69조)가 있다.

27)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인신상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한 육체적 노동을 시켜 육체적·정신적으로 일정한 고통을 주는 형벌이다. 우리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28)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210면.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형법”(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2호로 수정보충)(『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796-798면.

그리고 주관적 구성요건도 ‘반국가적 목적’이라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애국적 인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민에 대한 테러행위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전선동의 내용을 불문하고 반국가적 목적인 경우에는 처벌하며, 공화국을 전복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조국반역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테러죄에 있어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등 일부 법정형을 완화한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표 2-1 반국가범죄

구분	범죄 행위	형벌
국가전복음모죄 (제59조)	·반국가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 혹은 음모에 가담한 자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테러죄 (제60조)	·반국가 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랍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테러행위를 한 자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반국가 선전, 선동죄 (제61조)	·반국가 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조국반역죄 (제62조)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간첩죄(제63조)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국가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파괴암해죄 (제64조)	·반국가 목적으로 파괴, 암해행위를 한 자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앞 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무장간섭 및 대외 및 대외	· 타국 사람이 부추겨서 북한에 대한 무장간섭이나 외교단절, 조약파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관계단절사혹죄 (제65조)	행위를 한 자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제66조)	·공화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 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는 다른 나라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 한 자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 의 노동교화형

(2) 반민족범죄

기존형법에서는 민족반역죄의 기본형을 “사형 또는 전재산몰수형”으로 하고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및 전재산몰수형”으로 규정했던 것을 2004년 개정형법(제3장 2절)에서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기본형으로 하고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제67조)으로 규정하여 처벌 정도를 완화하였다. 특히 외국인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행위’(제69조)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2 반민족범죄

구분	범죄행위	형벌
민족반역죄 (제60조)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제68조)	·타국인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조선민족 적대죄 (제69조)	·타국인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이나 재산을 침해한 자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3)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2004년 개정형법 제3절(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불신고·방임죄)에서 종전의 규정을 조정한 것으로 기본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표 2-3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구분	범죄행위	형벌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한 은닉죄(제70조)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 자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죄(제71조)	·반국가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제72조)	·반국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 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4)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2004년 개정형법에서는 군사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장(4장)을 신설하여 국방위원회의 결정·명령·지시 집행태만죄(제73조), 군사시설파괴죄(제75조, 제76조), 무기 등 불법휴대·양도죄(제78조), 군사복무동원기피죄(제83조), 국방비밀 누설죄(제88조) 등 총 16개 조항으로 규율하고 있다. 종전 형법 제6장 제1절(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서 군사에 관한 범죄로 규정하였던 총 6개 조항은 삭제했다. 다시 말해 종전에 군사에 관한 중요범죄를 ‘국가의 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서 개별적으로 규율하였으나, 이를 체계화하여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여 국방위원장의 결정·명령·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집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등 민간인의 군사범죄를 확대하고 군수품에 대한 범죄유형을 다양화하는 한편, 법정형에 가중처벌을 확대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였다.

형사소송법은 군사범죄에 대한 수사와 예심은 특별수사·예심기관인 군사검찰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군사범죄에 대하여 특별재판소인 군사재판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군사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것은 북한이 최근 경제난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론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일반범죄

가) 일반범죄의 개념

북한은 일반범죄의 근원을 본질적으로 착취제도의 산물로 이해하고 있다. 북한의 형법은 일반범죄를 “반국가적 목적 없이 개인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로부터 국가사회질서를 문란시키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약취하며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³⁰⁾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형법학자들 또한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일반범죄가 생기는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 탓으로 돌리고 있다.³¹⁾ 즉, 일반범죄는 노동계급의 사상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근로자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의 잔재로부터 발생되는 범죄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범죄(절도·살인·강간·불량행위·매음·축첩 등)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후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개인주의·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가 뿌리 깊게 남아있어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를 침해하고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질서 및 혁명적 규율을 문란 약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³²⁾ 따라서 북한은 일반범죄를 사회적 교양과 징벌을 통해 개조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³³⁾

30) 김근식, 『형법학 2』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50면.

31) 위의 책, 24면.

32) 법무부 법무실, 『북한법연구(VII)』 (법무자료 제128집)(서울: 법무부, 1990), 47-48면, 69-70면.

33) 북한은 일반범죄를 법적 제재를 위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정치범죄와는 달리 ‘근로자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법적 제재를 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403-404면).

나) 일반범죄의 분류

2004년 개정형법은 일반범죄를 ①경제범죄(형법 제5장: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②문화범죄(형법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③행정질서범죄(형법 제7장: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④공동생활침해범죄(형법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⑤생명·재산범죄(형법 제9장: 국민의 생명 재산을 침해한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1) 경제범죄(형법 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북한은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그 지도이념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경제적 착취의 배제와 전체인민의 복리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다.³⁴⁾ 경제적 착취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모든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요청되고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재산제도는 필연적으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채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생산·분배·소비 등 경제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국가적 통제, 경제질서의 공법적 규제,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무제한적인 명령과 강제, 개인의 생존이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³⁵⁾ 이러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 따라서 생산수단은 국가에 귀속되고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소비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2004년 개정형법(제5장)은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를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제1절 제89-98조),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제2절 제99조-172조),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제3절 제173-184조), ‘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제4절 185-192조) 등으로 대별하고 있다.

첫째,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는 국가재산에 대한 범죄로

34)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서울: 법무부, 1993), 435면.

35) 권영성, 『헌법학원리』(서울: 법문사, 1997), 157-158면.

서 종전 기본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재산공갈죄를 신설하고, 특히 대량 재산에 관한 범죄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으로 엄중히 가중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다소 강화하였다.(제91조)

둘째,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종전의 18개 조항을 74개 조항으로 확대하여 전면 개정한 것으로 증권위조·위조증권사용죄(제101조, 제102조), 탈세죄(제108조), 법인가장 경제거래죄(제112조), 상표권침해죄(제113조), 거간죄(제114조), 수출입질서위반죄(제117조), 고리대죄(제118조), 불법외화벌이죄(제125조), 계약규율위반죄(제131조), 상품공급및판매질서위반죄(제156조, 제157조), 밀주죄(제159조, 제160조), 가격사업질서위반죄(제170조)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다수 신설하거나 구체화하고 있다.

셋째,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와 ‘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종전의 기본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자의적 해고·전보죄(제189조), 분배질서위반죄(제190조), 미성년에게 노동을 시킨 죄(제191조) 등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다소 높임으로써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형법을 통해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를 다소 구체화하거나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의 수호를 위한 체제단속을 강화하고 경제개방에 따른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이외에도 경제악화로 인한 주민생활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³⁶⁾

(2) 문화범죄(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2004년 개정형법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대외 교역과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주의 문화를 해치는 퇴폐풍조가 급증하자 그에 대응하기 위해 퇴폐적인 문화반입 및 유포 죄(제193조), 퇴폐행위죄(제194조) 등 성 풍속 범죄와 관련한

36) 법무부,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서울: 법무부, 2005), 16-18면.

범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러한 풍속형법의 성격을 띤 규정은 매음죄(제261조), 미신행위나 조장죄(제267조, 제268조), 비법혼인죄(제270조) 등이 있다. 또한 종전 형법의 6개 조항을 26개 조항으로 확대하여 전면 개정한 것으로 컴퓨터망 침입죄(제201조), 정보과손죄(제202조), 허위정보입력유포죄(제203조) 등 컴퓨터관련 범죄와 역사적 도굴(제197조)과 밀수행위관련죄(제198조) 등을 신설하여 노동단련형이 아니라 중벌인 노동교화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형법적 요소인 치료거부죄(제208조), 의료사고죄(제209조), 불량약품·의료기구 생산죄(제210조), 사람장기 등 매매죄(제214조), 가짜의약품 및 식료품 제조·판매 죄(제215조), 마약밀수 및 밀매 죄(제218조) 등을 신설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적대방송청취, 인쇄물·유인물 수집 및 보관, 유포죄(제195조)’를 신설하여 대외개방 등에 따른 사회의 이완분위기에 대처하고 사회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문화·공동생활을 유지할 목적으로 주민생활의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4년 개정형법의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는 반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회주의 문화·공동생활을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유형을 신설하고,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대외개방과 경제적·현실적 이유에 기인한 사회질서의 이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경제·사회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음란·퇴폐 등 외래문화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주민사회에 유입되고 있어 매음행위·미신행위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³⁷⁾

북한은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를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사회 안에 썩어빠진 부르조아 반동문화를 침투시키고 널리 퍼트리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한 결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노선의 관철을 방해하며 저해하는 불건전한 문화적 요소들과 경향들을 반대하는 사상투

37) 컴퓨터범죄의 신설과 관련하여 북한사회에 컴퓨터가 비교적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은 극히 제한된 인원이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쟁에 뒷받침하여 법적 투쟁'을 힘 있게 전개해야할 것을 주장한다.³⁸⁾

(3) 행정질서범죄(제7장: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2004년 개정형법의 행정질서범은 종전의 군사에 관한 범죄를 제4장으로 재편하고, 28개 조항을 39개 조항으로 확대하는 등 대폭 개정하였다. 특히 법일꾼의 불법체포·구속죄(제252조), 사건과장·날조죄(제253조), 비법석방죄(제254조) 등 법일꾼의 직무집행관련 범죄를 신설하거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증인협박죄(제237조), 직무집행자에 대한 복수죄(제238조), 부당한 신소죄(제244조),³⁹⁾ 판결과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죄(제256조) 등을 신설하여 사법제도와 관련된 범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처벌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일반행정질서와 관련하여 출판질서위반죄(제226조), 과실적 비밀누설죄(제231조), 대외적 권위를 훼손한 죄(제245조), 관리일군이 아닌 자의 뇌물죄(제242조), 증명서매매죄(제225조), 허위날조·유포죄(제222조) 등을 신설하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비법국경출입죄(단순탈북자)에 대해 종전(1999)의 “국경을 넘는 자”를 “국경을 넘나든 자”로 개정하고, 형량을 종전의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제233조)으로 법정형을 대폭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의 탈북사태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⁰⁾ 반면에 ‘조국반역죄’(제62조)에서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

38) 김근식, 『형법학 2』, 120면; 박세진, “북한형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4, 48-49면 재인용.

39) ‘신소’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또는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켜줄데 대하여 당 및 국가기관, 기업소, 근로단체에 제기하는 인민들의 요구이다.(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916면)

40) 북한헌법(1992.4.9) 제86조는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8년 개정 헌법에는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라고만 하여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하여 탈북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격상시키고 있는데, 이는 생계형 탈북자 등 단순탈북자와 구별을 두는 한편, 체제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

(4) **공동생활침해범죄(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종전의 10개 조항을 20개 조항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매음죄(제261조), 음탕행위죄(제262조), 비법혼인죄(제270조), 미신행위 및 조장죄(제267조, 제268조) 등 음란·풍속에 관한 범죄를 확대·강화하여 반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패싸움죄(제259조), 검열원·감독원 등 거짓행세죄(제264조), 칭호참용죄(제265조), 권리의 실력행사죄(제269조), 공무원이 사례금 및 이득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은 죄(제274조), 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제277조) 등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범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5) **생명·재산범죄(제9장: 국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제1절)는 종전의 14개 조항에서 18개 조항으로 확대하였으나 그 기본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살인죄를 고의적 중살인죄, 고의적 경살인죄, 과실적살인죄 등으로 세분하고(제278조 내지 제282조), 상해죄를 고의적 중상해죄, 과실적 중상해죄, 고의적 경상해죄 등으로 보다 세분화(제283조 내지 제287조)하였다.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제2절)는 그 기본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개인재산을 빼앗은 죄와 개인재산 공갈죄를 구분하고(제297조, 제298조), 특히 대량재산에 대한 범죄 등 정상관계를 세분화하여 그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제301조 등)하고 있다.

2. 형벌의 본질과 유형

가. 형벌의 본질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다고 하는 응보형주의와 사회방위 달성의 수단이라는 목적형주의의 상호대립은 학설상 많은 논의가 되어왔다. 그러나 북한의 형법학자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형벌을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반대하고 저해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유린하고 침해하는 반혁명범죄들과 일반범죄자들에게 가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폭력적인 진압수단이며 제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⁴¹⁾

북한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혁명범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고 일반범죄자들을 제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보장하는 폭력적 강제수단이요 프롤레타리아의 예리한 무기가 바로 형벌이라는 것이다.⁴²⁾ 북한의 형벌은 폭력적인 징벌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다른 제재 수단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형벌은 재판기관들에 의해 형사재판의 절차로서만 적용되는 강제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제재와 구별된다.⁴³⁾

나. 형벌의 유형

북한의 형법관은 형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변화를 보이는데, 1954년 형법에서는 사형, 징역, 교화로동형, 벌금, 일정한 권리의 박탈, 일정한 직업 또는 영업의 금지, 일부 또는 재산의 몰수 등을 규정하였다. 1974년 개정 형법에서는 사형, 징역형, 교화로동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등으로 수정하였다.

1987년 개정형법부터는 기본형벌과 부가형벌로 구분하고, 기본형벌에는 사형,

41)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403-404면.

42) 김근식, 『형법학 (1)』, 156면.

43) 위의 책, 157-158면.

로동교화형이, 부가형별로는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은 새로 도입된 것이다.

오늘날 적용되는 개정형법상(2004) 형벌은 기본형인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이 있고, 부가형으로는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이 있다. 동 형법에서는 ‘로동단련형’을 신설하고, 자격박탈형과 자격정지형을 별도의 부가형별로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표 2-4 북한 형벌의 변화

구분	형벌	
1950년 형법	사형, 징역, 교화로동, 벌금, 일정한 권리의 박탈, 일정한 직업 또는 영업의 금지, 일부 또는 재산의 몰수	
1974년 형법	사형, 징역형, 교화로동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1987년 형법	기본형벌	부가형벌
	사형, 로동교화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2004년 형법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

1) 기본형벌

가) 사형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형벌로,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이거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형법 제29조)

개정형법 이전에는 사형집행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1997년에 채택하고 1998년 개정된 판결판정집행법 제32조에서 “사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서 등본, 사형집행지휘문건을 받은 다음 총살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집행방식을 규정하고 있었다.

북한형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국가전복음모죄(형법 제 59 조), 테로죄(제 60 조), 조국반역죄(제 62 조), 민족반역죄(제67조) 등이 있고, 일반범죄 중에는 고의적 중살인죄(제278조) 등이 해당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집행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승인이 필요(제419조)하며, 사형은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 등본을 받은 후(제422조) 검사의 참가하에 집행하며(제 421 조), 형벌집행기관은 사형 집행결과를 3일 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송부(제423조)하도록 되어 있다.

나) 노동교화형

중전의 징역형을 노동교화형으로 개칭하여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 즉,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신체상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을 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일정한 고통을 주는 형벌이라 할 수 있다.

유기로동교화형과 무기로동교화형 집행기간에는 국민의 기본권리가 정지된다. 유기로동교화형 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하며,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우에도 유기로동교화형 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유기로동교화형 기간 1일로 계산한다.(제30조) 그러나 구형법의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류되어 있었던 기간은 로동교화형 기간에 계산하여 넣는다”(1999년 형법 제25조)고 하여 다소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었다. 특히 2004년 이전의 중전 형법에서는 공민권의 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다만 공민등록법에서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로동교화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 그러나 집행을 유해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회수하지 않는다”(제13조)라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개정형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일

반범죄 등 대부분의 범죄행위에 노동교화형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노동단련형

노동단련형은 새로운 도입된 것으로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형벌이다. 노동교화형과는 달리 노동단련형 집행기간 중 국민의 기본권리는 보장된다.

노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로 하고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우에도 노동단련형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노동단련형 기간 2일로 계산하도록 규정(제 31 조)하고 있어, 노동교화형 1일이 노동단련형 2일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노동교화형과는 달리 ‘일정한 장소’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형법의 총 245개 처벌조항 중 169개 조항에서 노동단련형을 기본형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자의 노동력을 국가경제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형법의 기본형벌은 생명의 박탈과 인신의 구속이라는 형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범죄자에 대한 인신구속의 기준은 ‘집행유예적용조건과 기간’(형법 제51조), ‘집행유해의 법률적효과’(제52조)라는 집행유해 제도를 두고 있다. ‘판결판정집행법’(제37조)에 의하면 집행유해는 판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⁴⁴⁾

그리고 형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특사, 대사를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벌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53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준하기 위

44) ‘판결판정집행법’ 제37조에는 “집행유해를 적용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 등본, 확정통지서를 받은 기관이 판결서에 지적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여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 적극 노력하여 교양개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기로동교회형, 로동단련형은 받은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무기로동교회형은 15년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하거나 유기로동교회형으로 감형할 수 있다. 형벌집행의 면제 또는 변경과 관련한 제기는 형벌집행기관이 하며 이 제기는 해당 재판소가 심리, 판정한다(제54조).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범죄 유형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범죄⁴⁵⁾

범죄 유형	교회소		일정한 장소
	무기로동교회형	유기로동교회형	로동단련형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제59-72조 중 14개 범죄)	국가전복음모죄 등 6가지	국가전복음모죄 등 14가지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제73-88조 중 17개 범죄)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등 15가지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는 죄 등 10가지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죄(제89-192조 중 104개 범죄)	국가재산략취죄, 국가재산강도죄 등 6가지	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산 빼앗은 죄 등 81가지	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산 빼앗은 죄 등 83가지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제193-218조 중 26개 범죄)	역사유물 밀수, 밀매죄, 마약 밀수 등 3가지	퇴폐적 소요죄, 직무집행방해죄 등 30가지	직무집행방해죄, 허위날조, 유포죄 등 29가지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제219-257조 중 39개 범죄)		집단적 소요죄, 직무집행방해죄 등 30가지	집단적 소요죄, 직무집행방해죄 등 29가지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제258-277조 중 20개 범죄)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등 15가지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등 18가지
제9장 공민의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제27-303조 중 26개 범죄)	고의적중살인죄, 유괴죄 등 3가지	고의적중살인죄 등 25가지	정당방위초과중상해죄 등 13가지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 796-840면 재정리.

2) 부가형벌

가) 선거권박탈형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 범죄와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선거할 권리를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형벌이다. 재판소는 반국가 범죄와 반민족 범죄사건을 심리할 경우 선거권박탈 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선거권박탈형 기간은 5년을 넘길 수 없으며 유기로동교화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형법 제 32 조).

선거권박탈형은 기본형벌집행 종료후 판결서 등본과 출소증을 접수한 지역 인민위원회가 담당하고(형사소송법 제426조), 자격박탈 및 정지형은 기본형벌집행 종료 후 판결서등본 등을 접수한 해당 자격을 준 기관이 담당(형사소송법 제427조)하도록 하고 있다.

나) 재산몰수형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을 국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형벌이다. 이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식량과 생활필수품과 돈을 남겨놓는다.(형법 제33조) 특히 재산몰수형은 집행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재판소 집행원이 하되, 이 경우 2명의 입회인을 세우며 재산몰수목록을 기록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형벌의 집행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형사소송법 제428조)하고 있다.

또한 재산몰수형이 취소되었거나 사건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몰수하였던 재산을 돌려주며, 현물로 돌려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물건에 해당하는 값을 돌려주어야 한다(형법 제 34 조).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한 자가 재산담보처분이 있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배상한다. 그러나 재산담보 처분 이후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배상하지 않는다(형법 제 35 조).

다) 자격박탈형과 자격정지형

2004년 개정형법에서는 종전의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을 자격박탈형과 자격정지형으로 분리하였다. 자격박탈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던 일정한 자격을 완전히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형벌이다. 재판소는 일정한 자격을 범죄를 저지르는 데 이용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격박탈 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제 36 조).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던 일정한 자격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형벌로서, 재판소는 일정한 자격을 범죄를 저지르는 데 이용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격정지 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자격정지형 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으며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제 37 조).

3) 사회적 교양처분

북한은 ‘사회적 교양처분’이라는 형태로 인신 구속 없이 처벌하는 제도가 있다. 과거 형법(1987)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사회적 교양처분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개준성 정도’,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교양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9조).⁴⁶⁾ 이외에도 ‘판결판정집행법’(제29조, 제38조), 검찰감시법(제36조),⁴⁷⁾ 형사소송법(제62-69조) 등의 법률을 통하여 사회적 교양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⁴⁸⁾

46) 형법 제50조에서는 사회적 교양 처분을 받은 자가 이미 저지른 범죄의 형사소추 시효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양정하고 그 전부 또는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양정한 형벌을 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 제36조에서 “검사는 국가의 법을 어긴자를 사회적 교양을 통하여 개조하려 할 경우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넘기거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균중투쟁을 벌리도록 제기할 수 있다”라 규정했다.

48) ‘사회적 교양처분’에 대하여 1999년 형사소송법 제13조에서 간략히 언급하였으나,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제2장 제7절 8개조(제62-69조)로 구체화하였다.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게 되면 즉시 석방(형사소송법 제64조)하여 범지를 저지르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형사소송법 제66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회적 교양처분은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처벌 상 범지를 저지르지 않은 자와 같이 대우하는 것이다.

그리고 ‘판결의 종류’와 관련하여 “피소자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사회적 교양처분을 하는 판결은 유죄판결이며 그에게 범죄가 없다는 판결은 무죄판결”(형사소송법 제 343 조)로 규정하고 있다.

표 2-6 형사소송법상 사회적 교양처분

구분	주요 내용
사유(제62조)	· 14살 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가 범지를 저질렀을 경우 · 형벌을 주지 않고도 교양 개조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절차(제63조)	- 검사, 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62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검사는 상급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에게 사회적 교양처분결정 · 재판소는 피소자에게 사회적 교양처분판결, 판정
처리(제64조)	· 구류되어 있는 피심자, 피소자에게 사회적 교양처분결정, 판결, 판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석방
지위(제66조)	·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은 자는 범지를 저지르지 않았던 자와 같이 인정
교양담당자(제67조)	·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양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거주하고 있는 리(읍·구·동)에서 책임
취소사유(제68조)	·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은 자가 이미 저지른 범죄의 형사소추시효기간에 새로운 범지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에게 적용하였던 사회적 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책임을 지우고,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도 함께 계산
취소절차(제69조)	· 검사, 재판소는 동법 제68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회적 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사건을 예심원에 반송

이외에도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2장 일반규정 제5절에서는 ‘형사소송의 중지’라는 새로운 절을 신설했다.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거나 도주하여 형사사건을 계속 취급할 수 없을 경우 형사소송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병과 중병에 대한 감정은 법의 감정 의사 또는 인민병원 의

사협의회가 한다(제43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동법 제4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①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을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② ‘검사는 기소를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③ ‘재판소는 재판을 중지하는 판정을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제44조). 그리고 의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감시는 범죄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이 담당하게 되어 있다(제47조).

Ⅲ. 북한의 범죄 실태 분석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엄중한 처벌 그리고 주민 간의 감시와 사적 소유물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자본주의 국가에 비하여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⁴⁹⁾ 북한체제 역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강력한 사회통제를 통해 비교적 안정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범죄의 유형과 빈도가 한정되거나 미약하여 범죄행위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따른 영향과 1990년대의 극심한 경제난 등의 요인으로 다양한 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탈북자들의 진술과 중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절도와 강도 등의 경제범죄, 국가의 배급제와 관련된 공직자의 부정부패, 정치범죄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북한당국은 다양화되고 급증하는 범죄양상에 대하여 반당·반혁명적 요소의 발호(반국가범죄), 간부계층의 부정부패 만연(권력형범죄),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물질만능풍조(경제범죄 또는 생계형범죄), 청소년 계층의 사상적 이완(청소년 범죄) 등을 ‘내부의 병폐현상’으로 규정하여⁵⁰⁾ 범죄와 사회일탈행동을 문제화하고 있다.

1. 정치범죄

북한의 정치범죄는 형법(제59-66조)에 규정한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외에도 김일성 및 김정일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비롯하여 체제비판도 반국가범죄로

49) 기광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184면.

50) 권영경 외, 『북한이해 2000』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0), 365면.

인정하고 있다. 즉, 김일성·김정일에 관한 각종 출판물 및 교시 비방과 비난, 초상화 등 상징물 훼손, 공산주의 체제의 비난 등도 반국가범죄에 해당된다.

반국가 사범(事犯)은 일반범죄와 달리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한다. 보안원(경찰)이 반국가범죄를 적발하여 체포하면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보위부로 인계하고, 보위부는 수사를 한 후 비공개 재판을 통하여 사형과 같은 중형에 처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집단 수용시킨다.

가. 반체제 사건

북한주민들이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중국을 넘나드는 가운데, 중국과 남한 등의 외부정보가 유입되면서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등 국경 접경 지대를 중심으로 반체제 활동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다. 이밖에 신의주, 의주, 창성군, 벽동군 등 중국 인접의 평안북도 지역도 외부정보의 유입이 쉽고, 전통적인 ‘반골지방’으로 꼽히고 있어 반체제 활동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⁵¹⁾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반체제 활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7년 망명한 김덕홍(전 북한 여광무역 총사장)은 ‘북한 내 2~3명씩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반체제 단체들이 2004년 6월부터 북한 전역에서 반김정일 전단을 살포하는 등 공개 활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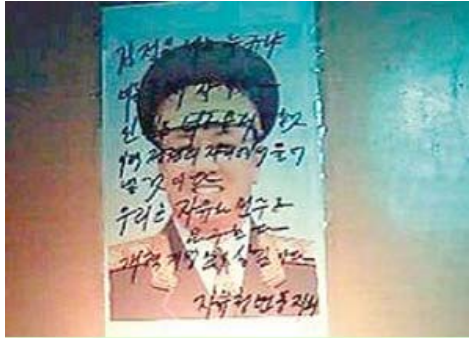
특히 2005년 ‘김정일을 타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하는 반체제 활동 동영상(35분)이 공개되면서,⁵³⁾ 북한 내 반체제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51) 북한은 6.25전쟁 이후 1970년대까지 박헌영, 이승엽 등 남로당 출신 체거, 소련과와 연안과 대숙청(8월 종파사건), 갑산과 숙청, 5.25 교시에 따른 지식인 숙청 등 대규모 계급투쟁을 전개하면서, ‘반당종파분자’들을 함경도 등 외곽지역으로 소개(疏開)하고, 지주와 자본가, 기독교인과 그 가족 등 계급투쟁 피해자들인 소위 ‘적대계층’ 주민들도 함경도, 양강도 등지로 유배했다. 때문에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등지는 전통적으로 계급투쟁의 피해자들이 몰려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뿌리 깊은 반체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52) 김덕홍, “北반체제 단체들 공개활동”, <경향신문>, 2004년 8월 5일자.

53) “김정일 타도…자유 되찾자 북한 반체제 동영상”, <연합뉴스>, 2005년 1월 17일자; “자유청년동지회 성명”, ‘Daily NK’(www.dailynk.com), 2005년 1월 17일자. 이 동영상에는 북한 내부 반체제 조직으로 파악되는 <자유청년동지회>가 2004년 11월 말경 함북 회령시 <1.17공장>과 대덕리 마을 입구에 반체제 유인물을 부착하고, 북한인민들의 ‘반(反)김정일 봉기’를 촉

그림 1 반체제 구호 사진



▲ 김정일의 사진 위에 '자유청년동지회'라고 밝힌 단체가 "우리는 자유와 민주를 요구한다"는 반체제 구호를 적어 놓았다. 데일리 NK가 함경북도 회령시 한 공장에 붙여 있는 사진이라며 2005년 1월 17일 공개한 사진./dailyNK.com제공.

다. 동영상을 촬영했던 <자유청년동지회> 회령시 지부장 박대홍(가명·38)씨는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으로 2005년 탈북한 후, 동년 11월 국내에 입국했는데, 그에 따르면 <자유청년동지회>는 회령시에 4개조 7-8명씩 모두 30명 내외의 회원이 활동하는 등 북한 내 자유청년동지회 회원이 300여 명에 달하고, 다른 반체제 조직도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⁵⁴⁾

북한의 반체제 활동은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 이완과 더불어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국경지역을 넘나드는 탈북자를 통한 외부정보의 유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반체제활동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보위부를 직접 장악하고 주민은 물론 중앙행정기관까지 정보사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보위부는 17세 이상의 주민들에 대한 자료카드를 작성하여 감시하고 있다.

표 3-1 자유청년동지회 성명

자유청년동지회 성명	
격문 1:	개방을 주장한 김일성 김용운 사망원인 장성택의 체포 김정일이 한짓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어째서 굶고 헐벗으며 죽어야 하는가 우리를 어이로 끌고 가는것이냐 인민들이여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찾자. 자유청년동지회
격문 2:	김정일은 누구냐. 너는 독재자이다. 인민은 너를 용서 안할 것이며 정권의 자리에서 들어낼 것이다. 우리는 자유와 민주를 요구한다. 개혁 개방만이 살길이다. 자유청년 동지회.

구하며 국제사회에 북한민주화운동의 지지를 호소하는 결의문 낭독이 생생히 담겨있다. 북한 뉴스를 전문을 제공하는 'Daily NK'가 <피랍탈북인권연대>(사무총장 도희윤)로부터 입수(2005.1.13)하여 2005년 1월 17일 공개함으로써, <자유청년동지회>가 북한 내의 반체제 활동하는 단체임이 대외에 알려졌다.

54) 회령시의 한 무역업체 자재 운반기사로 일했던 박대홍씨는 한국과 일본에서 동영상이 방영되면서 목소리가 노출되자, 2005년 2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한 뒤, 태국을 거쳐 2005년 11월 21일 국내로 입국했다(“北 반체제활동 동영상 촬영 탈북자 입국”, <연합뉴스>, 2005년 11월 21일자).

격문 3: 김정일 타도하라! 인민들이여! 모두일어서 독재자를 몰아내자. 자유청년동지회

자유청년 동지회는 전국의 인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김정일의 선군정치라는 파쇼 독재통치와 독단정치로 하여 인민들은 극도의 생활 고로 인한 기아와 빈궁 속에 허덕이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를 평범한 노동자, 농민, 그 아들 딸들이 김정일과 그 당으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적 불공정성과 3천만의 가난뱅이, 굶주림과 경제침해뿐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신 김일성과 김정일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고 그 밑엔 아무런 희망과 미래도 없는 까마득한 공간이며, 그 밑에는 우리 자기 자신들이 죽어야 할 무덤 밖에 없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 죽어야만 하는가. 이런 것이 세상에서 우월한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제일인신 위대한 영도자를 모신 김일성 민족의 참모습이란 말인가. 우리들이 굶어 죽을 팔자란 태어난 것이란 말인가.

김정일은 마치도 우리가 못 살고 못 먹는 것이 미국의 경제봉쇄와 미국의 조선에 대한 새 전쟁 도발책 등으로 하여 국방건설에 힘을 넣고 있어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지난 시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김정일 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오늘의 이 모든 현실은 어떻게 출발된 것이나. 우선 김정일 독재정권이 낳은 필연적인 산물이다. 김정일은 신적 존재로 여기면서 개인미신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변덕스럽고 제멋대로 하는 성격, 특이한 도량, 극도의 현실, 잔인성과 특수성으로 하여 당자금이요, 혁명자금이요 하면서 나라의 방방 곡곡에서 인민들이 피땀으로 짜낸 값비싼 상품들과 희귀한 물건들로 김정일과 그 족속들의 특권과 특전, 부정 부패로 얼룩져 가고 있으며, 보잘것 없는 간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인민들은 더 큰 불행에 시달리고 있다.

나라의 방방곡곡, 도, 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 김일성 김정일을 위한 사적지요 전적지, 연구실, 동상 등 우리가 본 것이 얼마나 많으며 보지 않은 것은 얼마이겠는가. 이 나라의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국가의 재산이라고 하는 김정일의 개인 것이 아니란 말인가. 오늘의 우리나라의 정세는 당 내부가 뒤숭숭하며 나라가 사회적 폭발 전야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는 현실성이 없는 관료주의적이며 주관적인 행동과 개혁으로 일관된 시책으로 인민들은 노동당을 믿지 않으며, 노동당원들은 당 중앙위원회와 정부를 믿지 않으며 모든 새로운 결정들을 컷등으로 듣는 실정이다. 김정일의 광폭정치에서 종교, 언론, 출판, 평화적인 집회가 과연 보장되어 있는 것이 어느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김정일의 정치 하에서 인민들이 장마당에서 성냥 함 갑 내 놓고 팔지 못하게끔 지정하고 있다.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의 병영식 사회와 같은 꼼짝달싹 못하게 인민들을 묶어 놓고 통치하고 있다. 결국 개인미신은 우리들 자신을 머저리로 만들고 제 무덤을 파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우리가 이 오물통에서 어떻게 살이 찌고 오래 살 수 있겠는가. 우리는 김정일의 장난감이고 김정일의 무거운 짐이나 날아다 주며 세상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나 되는 하수인 신세가 아니란 말인가. 인민들이여 정신을 차리고 자기 머리를 정돈하며 자신의 머리로 모든 문제를 탐구해 보자.

김정일의 정치로 희생된 엄혹한 환경이 우리를 언제나 자기를 억제하고 침착하고 강인하게 만들어 주어 국가가 없이도 살아가게 해주지 않았는가. 이것이 정말 미국의 경제봉쇄 때문이고 미국의 탓이란 말인가. 김정일의 시책인 주체의 모범의 나라, 사회주의의 나라가 이렇게 사는 것이라면 미국식 민주주의에 비해 볼 때 어느 것이 진짜 민주주의이고 어느 것이 가짜 민주주의 이겠는가.

김일성이 소련식 공산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이 땅에 펼쳐놓고 그것을 조선식 사회주의로 둔갑시켜 놓았는데 몇 십 년 동안이나 붉은기들을 머리 위에 꽂아놓고 날과 달을 보내면서 독재정치만 일삼아 인민들의 오금만 묶어 놓는 정치만 하였지 오늘날 우리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가.

공산당이 정치하는 나라에서는 온갖 유흥참극과 동족상쟁, 부정부패, 죄없는 사람을 의심 처형하는 독재 정치 밖에 역사에 이름 남길 무슨 자랑거리가 있단 말인가. 미국에서도 백인과 흑인간의 살육이 있었

지 동족 상쟁은 없었다. 김정일이 그렇게도 인민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이다. 나라에서 도망쳐 자본주의 나라로 간 사람들이 돈을 보내어 자기 가족 친척들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오늘날 새로운 대중, 인민의 최하층에 속하는 순박하고도 평범한 대중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의 아주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자유와 평등, 공정성과 인도주의의 넓고 넓은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개혁과 개방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김정일이 어째서 개혁과 개방을 한사코 가로 막는가. 개혁과 개방을 하면 우리 인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소학교 학생도 알고 남는 초보적인 문제이다. 김정일은 개혁과 개방을 하면 인민은 잘 살고 자기는 죽는 것으로 생각한다. 인민들은 독재정치를 하면 김정일은 살고 인민은 굶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민들이 빨리 죽는 길은 독재정권 수호이고 빨리 잘 사는 길은 개혁과 개방을 일구는 것이다. 김정일은 하루 빨리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법을 뜯어 고쳐 개혁 개방 하든가,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개혁과 개방을 하면 누구에게나 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인민들이여, 자유청년 동지회의 호소에 따라 자신들의 처지를 구원하는 거창한 위업에 한사람 같이 떨쳐 나서 다시는 속고 살고 이용당해 살지 말기 위해 일어나자. 폭력 투쟁과 비폭력 투쟁을 배합한 여러가지 형태의 싸움을 벌여라. 당신들의 식량과 생활비를 주지 않는 공장 기업소 출근을 거부해도 당당한 투쟁으로 된다. 미국을 비롯한 각급 나라들과 인권옹호기구 단체들은 김정일 독재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세계적 판도로 확대시켜 우리들의 자유청년동지회에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주기 바란다.

승리할 때까지

자유청년동지회

* 자료: “자유청년동지회 성명, ‘Daily NK’(www.dailynk.com), 2005.1.17.

나. 쿠데타 사건

북한의 대표적인 쿠데타 사건으로는 ‘소련 푸른제 군사종합대학 출신의 쿠데타 사건’(1992-93)과⁵⁵⁾ ‘6군단 쿠데타 모의사건’(1995.4)이 있다.⁵⁶⁾

55) 소련의 ‘프른제 종합군사학교’ 유학과 중심의 군사엘리트(안종호 상장)들은 김정일의 후계체제 선정에 불만을 품고, 소련의 지원 하에 조선인민군 창설 60주년이 되는 1992년 4월 25일 사열식이 거행될 때 쿠데타를 시도하려 했다가 실패했다. 이 사건은 소련의 KGB에서 쿠데타계획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쿠데타 모의사건과 관련된 자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 군부 내 친소파의 세력이 급속히 위축되었다.

56) 당시 6군단은 청진에 사령부를 두고 함경북도 전체를 관할하였다. 6군단은 3개 보병사단과 4개 방사포 여단, 1개 포병사단으로 구성되었다. 월간잡지 『신동아』는 “김일성 사망 직전父子 암투 120시간”(2005년 8월호, 142~164면)과 “진 북한 핵심 관료 육필로 쓴 ‘김정일 권력 장악 비화’”(2005년 10월호, 120~136면), “진 북한 핵심 관료 육필수기 3탄 ‘프른제 아카데미 사건’과 ‘6군단 사건’”(2006년 3월호, 120~137면)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핵심 권력기관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전직 관료의 수기를 게재하였다.

6군단 쿠데타 모의사건은 김정일 정권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을 가했던 사건으로, 함경북도 청진에 주둔했던 인민군 6군단의 정치위원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모의하다 발각되어 장성급을 포함하여 군 간부 40여명이 처형되고, 3~4백명이 처벌되었다.⁵⁷⁾ 이 쿠데타 모의는 6군단 정치위원(소장에서 중장 계급)을 중심으로 예하 부대 대대급 지휘관까지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경북도 도당 책임비서, 행정일꾼,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인민보안성) 부부장 이상 간부급이 대거 가담했다. 즉, 당시 함경북도 군, 당, 행정 책임자 대부분이 이 쿠데타 모의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 6군단 쿠데타 모의가 이처럼 도(道) 전체로 확대되고 있었음에도 당시 6군단장이었던 김영춘(1994년 3월 6군단장 부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당시 정치위원들은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으로 김일성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김영춘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김영춘은 쿠데타 진압을 도와 1995년 10월 인민군 총참모장에 올랐다.⁵⁸⁾ 이와 관련하여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2008년 9월 6군단 사건 수습에 나간 김영춘을 장성택이 조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조직 확대를 위한 과도한 달러 유통이 단서가 되어 군 보위국의 수사망에 적발되어 실패했지만, 군부가 무조건 김정일 충성 일변도가 아니라는 점과 북한 내에서도 조건이 성숙되면 반체제 조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외에도 1999년 8월 24일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역의 도로공사에 동원되었던 제6군단 건설부대 가운데 식량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200여명이 폭동을 일으켜 120명이 처형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평양방송>(1999.10.5)은 비열한 날조극이라 비난하며, 그 사건 자체를 부인하였다.

57) “北 ‘6군단 쿠데타모의사건’ 아시나요?”(<데일리 NK>, <http://www.dailynk.com>, 2007년 9월 25일 검색).

58) “北 ‘6군단 쿠데타모의사건’ 아시나요?”, <데일리NK>, 2005년 1년 22일자.

다. 반김일성 · 김정일 전단 및 구호 사건

최근 김일성과 김정일을 비난하는 전단과 벽보사건들이 확산되고 있다.⁵⁹⁾

첫째, 김일성 유적지에 반(反)김정일 뼈라가 뿌려졌던 사건이다. 2006년 2월 10일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반(反) 김정일 뼈라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2006.2.17)은 “김정일을 거꾸로 세우자”라고 쓰인 뼈라 수십 장이 온성군 소재 왕재산(해발 239m)에 뿌려져 보위부 등 관계당국이 수사에 나섰다”고 전하며, “왕재산은 김일성의 항일업적을 기리기 위한 동상과 사적지가 대대적으로 건설된 곳이어서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1970년대 김정일의 지도하에 건설된 ‘왕재산 혁명전적지’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주민들에게 학습시키는 ‘대(大)노천 박물관’으로 알려지고 있다.⁶⁰⁾

둘째, 반체제 조직들에 의한 김일성 비난 벽보 사건이다. 2002년 탈북한 강제혁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끝난 1989년 9월 1일 평양에서 “우리들의 투쟁”이란 명의를 “김일성 김정일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봉건왕조 체제라고 성토”라는 벽보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 벽보는 “지금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봉건통치 국가일뿐이다. 인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을 강요하면서 김일성과 간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다. 우리는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원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12명을 체포하여

59) 최근 김정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이상화와 충성심이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북부지역과 평양시를 비롯한 도시의 간부들과 자유분방한 젊은 세대들 속에서는 은밀한 사석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반 김정일 뼈라나 벽보사건들이 주민들속에 알려지고 있다는 것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상화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난과 조롱, 반 김정일 뼈라와 벽보 사건들이 소문으로 유포된다는 것은 북한사회에서는 엄청난 변화이다 (김승철, 심층분석 “북한정권의 통제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본격적인 체제 해체의 원년이 될 것 -”, 『北韓』, 2007년 1월호, 북한연구소).

60)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김영진, “김일성 유적지서 반김정일 뼈라 뿌려져”(〈데일리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500&num=18788>), 2006년 2월 17일자.

처형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상업대학, 평양건설건재대학 등 최고 엘리트 대학의 상급학년(3학년 이상) 학생들이었다고 한다.⁶¹⁾

셋째, 김정일을 비난하는 구호가 발견된 사건이다. 함흥출신 탈북자 권상호(가명, 25세)의 인터뷰(2006.2.2)에 의하면, 2003년 4월 김일성 생일(4·15)을 앞두고 함흥 대극장 건물 벽에 ‘김정일이 조선을 다 망쳐 놨다’, ‘함흥시를 나진처럼 개방하라’, ‘개혁개방만이 살길이다’ 등의 김정일을 비난하는 구호 사건이 발생하여, 보위부가 주모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⁶²⁾

2. 일반범죄⁶³⁾

탈북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사회는 식량난(1990년 중반) 이후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즉, 살인죄, 상해 및 폭행죄, 유괴죄, 명예훼손죄, 강간죄, 미성년자의 성범죄, 절도, 공갈죄, 횡령죄, 강도죄 등의 다양한 대인범죄가⁶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었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절도범죄, 청소년범죄, 성범죄, 위조화폐, 자본주의 문화 반입 및 유포죄, 마약범죄, 권력형범죄, 병역비리범죄, 도박과 미신 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61) 강제혁 기자(함흥출신, 2004년 입국), “평양 反체제조직 ‘우리들의 투쟁’ 최후”(〈데일리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Id=nk01300&num=35768>), 2007년 1월 17일자.

62) “함흥 대극장 김정일 비난 구호사건 있었다”(〈데일리NK〉: <http://www.dailynk.com>, 2007년 9월 25일 검색).

63) 북한의 2004년 개정형법 제240조는 ‘일반범죄 불신고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범죄라 함은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협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강도한 자”(형법 제95조),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자”(형법 제278조),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협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개인의 재산을 강도한 자”(형법 제302조)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 형법에 의한 일반범죄는 폭행, 협박, 살인,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개인 재산에 대한 강도죄를 의미한다.

64) 북한 형법 “제 9 장 국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제278-303조)해당되는데, 살인죄, 상해·폭행죄, 유괴죄, 명예훼손죄, 강간죄, 미성년자의 성범죄, 절도, 공갈죄, 횡령죄, 강도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고성호, “북한주민의 범죄와 이탈”,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서울: 국방송공사남북교류협력팀, 2005.12, 134면).

가. 절도범죄

북한체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을 경우는 절도 범죄가 발생했다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위기가 더욱 악화되어 배급체제가 붕괴되면서, 주민들은 부족한 식량과 생필품 등을 자급자족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절도행위가 만연하게 되었다.

북한에 발생하는 절도범죄 대상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나 개인 재산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국가재산에 대한 절도가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첫째,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국가재산에 대한 절도 품목은 양곡창고와 생필품 보급소, 공장의 부품과 자재, 농작물, 전화선과 전기선, 문화재 등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곡창고를 대상으로 한 절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청년들 3-4명이 무리를 지어 달빛이 없는 밤을 택해서 습격한다. 가장 흔한 절도는 공장의 부품을 빼내어 파는 경우로 심지어 공장 설비 조사원까지 공장부품을 공공연하게 빼낸다고 한다.⁶⁵⁾

둘째, 개인재산에 대한 절도행위는 주로 장마당이나 기차역에서 상인이나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양·모란봉·평천·칠곡·송신·서평양·북새거리 장마당을 중심으로 곡물, 의복류, 공장 자재나 부품 등의 절도 품목이 거래되고 있다.⁶⁶⁾ 기차역에서는 꽃제비⁶⁷⁾들이 여행객을 대상으로 절도행위를 하고 있다. 꽃제비들은 여행객들이 방심하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도한다.

최근에는 자동차 충전지가⁶⁷⁾ 주요 절도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가을에는 군인이나 건설공사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에 의한 식량절도 사건이 빈발하게

65) 위의 책, 127-128면.

66) 위의 책, 124-146면.

67) 북한은 전기부족으로 자동차 충전지를 이용하여 조명이나 기타 필요 전기를 이용하는데, 충전지 한 개당 보통 10만원-15만원, 최대 20만원까지 거래되기 때문에 충전지 절도에 성공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절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자동차 충전지 절도사건 빈발”, 오늘의 북한소식<NEWS LETTER> 제62호,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http://www.goodfriends.or.kr>), 2007년 3월 16일자, 5면).

발생하는 과정에서, 농장원을 경비하던 경비원이 군인에게 폭행당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북한당국은 단속과정에서 경비원을 구타한 자는 교화형에 처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도망치는 자는 사격토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⁶⁸⁾

<식량절도 사례>

- 2008년 황해남도 연안군 오희리 2작업반의 경우, 경비를 서던 농장원들이 군인들로부터 폭행당해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 2008년 강원도 평강군의 경우, 농장 경비원 폭행혐의로 관련 군인이 구속되었다.
- 2008년 강원도 안변군의 경우, 군인들에게 심하게 폭행 당한 농장 경비원 1명이 사망했고, 관련 군인들은 긴급 체포되었다.

나. 청소년 범죄

청소년범죄는 모방심리를 통하여 또래 집단간에 급속히 확산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989년 개최된 세계평양축전 이후 자본주의 문화가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은 출신성분에 대한 정치사회적 차별대우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 북한의 각종 범죄는 대부분 30세 이하에서 자행되고 있다. 청소년 범죄자는 전체범죄자의 80%에 이르고 있으며, 22-25세의 청년 범죄자들이 50%를 차지한다. 청소년 범죄는 조직화 양상을 보여 원산이나 함흥, 남포 등의 항구도시에는 조직원 50-60여명이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범죄유형은 소매치기, 빈집털이, 상점털이 등 절도와 폭력, 패싸움, 강도, 강간, 살인 등 성인형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⁶⁹⁾ 청소년범죄를 유발시키는 주된 요인은 출신성분에 의한 정치적 사회적 차별대우에 따른 사회적 진출의 좌절, 인격형성의 미비, 과도한 노력동원과 사상학습, 경제난에 따른 가정 붕괴,

68) 2008년 황해남도 연안군 오희리 2작업반의 경우, 경비를 서던 농장원들이 군인들로부터 폭행 당해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강원도 평강군의 경우, 농장 경비원 폭행혐의로 관련 군인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강원도 안변군의 경우, 군인들에게 심하게 폭행 당한 농장 경비원 1명이 사망했고, 관련 군인들은 긴급 체포되었다고 한다.

69)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제790호, 1992년 4월 9일자.

자본주의 확산 등에 따른 것이다. 권혁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북한 청소년들의 범죄 실상을 대변하고 있다.

“북한의 14-15세 청소년들은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아이들이 많다. 그들은 공부는 뒤에 놓고 싸움부터 배우려한다. 왜야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정성분과 뒷 힘이 없으면 세력이 센 집 아이들에게 밀리고 마니 그런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자연히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함흥시 동흥산구역에 있는 반룡산과 성천강 둑, 학교 운동장, 주변 야산에 가면 싸움 기술을 익히느라고 훈련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패싸움도 자주 일어난다. 전에는 무리 지어 돌이나 몽둥이 같은 흉기로 싸움을 했지만 지금 아이들은 흉기 쥐는 것을 한 수 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과 발로 기술싸움을 한다. 거루어 보아서 상대방이 자기보다 세면 순순히 손을 든다.”⁷⁰⁾

청소년 범죄는 북한 경제난이 지속화되면서 직장이나 공동체의 국가재산을 횡령하는 수준을 넘어 다른 사람의 물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히는 절도나 강도로 발전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는데, 제대 군인들의 절도나 강도 행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제대 군인들의 조직폭력 현상이 점차 전국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한 지역에서 제대군인들이 무리를 조직하면 다른 지역의 조직과 연계해 규모를 늘려가는 식이다. 이 조직들은 처음엔 단순 강도나 도둑질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큰 장사를 해서 돈이 있는 부유한 집이나 법 기관 종사자, 당 간부 집을 대상으로 쌀, TV, 가전제품 등을 썩쓸이하고 있다. 가끔 군부대를 습격해 무기를 털어가기도 한다. 제대군인들이다보니 연령대는 대부분 20-30대로 젊은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싸움에 능하다. 한편, 조직들이 우후죽순 생기다보니 얼마 전 남포와 함흥에서 큰 조직이 붙잡혔는데, 당국에서는 이를 시점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범죄 조직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현재 약 320여 명이 붙잡혔으며, 이 중에서 우두머리급만 약 3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⁷¹⁾

“2008년 12월 21일 강원도 원산시 칠봉리에서 황해북도 사리원으로 가는 도로에

70) 권혁, “24. 함흥2월”(『고난의 행군』, 정토출판사, 1999), 253면; 박원홍, “북한주민의 이탈 현상과 부조리 실태 연구”(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67면 재인용.

71) “제대군인 범죄조직 대거 검거열풍”, <오늘의 북한소식 56호>(http://www.goodfriends.or.kr, 2007.3.16).

출몰했던 강도가 붙잡혀 4명은 공개처형되었고 1명에게는 교화소 12년형이 내려졌다. "군인 복장을 한 이들 5명의 강도는 지난 2007년 9월에 체대한 군인들이다. 집에 돌아왔으나 직장 생활이 맞지 않은데다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워 모일 때마다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러다 작년 봄 춘궁기에 접어들어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가족들이 굶어 병들어 쓰러지고, 자신들도 굶주림에 지쳐갔다. 무리 중 한 체대군인의 여동생이 아이를 낳은 지 며칠 안 돼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다. 이것을 계기로 "이렇게 굶어죽을 바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며 본격적으로 강도행위에 나섰다. 그간 이들이 벌인 강도 사건은 조사된 것만 2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살인사건만 4건이고, 무려 200여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가택 수사 결과 3천만 원이 넘는 물품과 현금 8천만 원 상당이 회수됐다."⁷²⁾

이외에도 최근 청소년들로 조직된 '제비떼'⁷³⁾가 국경일대를 비롯하여 라신시, 청진시, 함흥시, 남포시 등 큰 도시의 시장이나 주변, 주택지 등을 배회하면서, 여자조직원들이 범죄대상자를 선정하면 흩어져있던 조직원들이 규합하여 절도, 밀수, 강간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살인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인 강력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제비떼들의 출몰로 주민피해가 심각해지자 '비사회주의 구루빠,⁷⁴⁾ 보안서 순찰대, 보위부, 청년동맹 불량청소년 구루빠' 등을 총 동원하여 제비떼의 실제파악과 단속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민반 회의 등을 통해 자녀 교양강화 지시 등 청소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제비떼들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빈집털이, 밀수, 마약밀매 등으로 범죄방향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72) "5인조 체대군인 강도 공개처형", <오늘의 북한소식 262호>, 2009.1.20.

73) 역이나 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10대 떼강도'를 '제비떼'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유랑걸식 하는 '꽃제비'와 구분되며,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제비떼는 최초 라진선봉(라선)시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부유층이나 중국인들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하려는 욕망에서 조직적인 범죄로 나서게 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제비떼는 평소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단 무리를 지어 행동할 때에는 무서운 강도로 돌변하게 된다고 한다.

74) 비사회주의의 구루빠는 동구권 붕괴이후 자유주의 사조 유입 증가에 따른 사회주의의 일탈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인민보안성 주관하에 보위부, 검찰 등과 합동으로 조직한 것이다.

다. 성범죄

북한 형법은 성범죄를 공동생활침해범죄의 대표적인 죄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성매매 사건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의 비교적 ‘깨끗한 사회’였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⁷⁵⁾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의 변혁기를 거치면서 식량, 생필품, 의류 등을 구입할 목적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들의 성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성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⁷⁶⁾

북한에서의 매춘 행위는 주로 역주변이나 장마당 주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장마당의 경우 얼굴에 화장을 짙게 한 젊은 여성들이 장사꾼을 대상으로 매춘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⁷⁷⁾ 이러한 매춘행위는 1990년대 중반에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역주변의 매춘 역시 장마당의 매춘행위와 유사하지만, ‘대기숙박업’⁷⁸⁾을 하면서 매춘을 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⁷⁹⁾ ‘고난의 행군’의 저자 권혁은 역전에서 자행되는 매매춘의 실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해주역에도 매음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주로 외지에서 온 여자들이다. 그들은 장사꾼 남자들이나 군인, 출장원 남자들을 상대한다. 그들은 해주 역전 앞에 집을 잡고 숙박할 손님을 데리러 나온 것처럼 하고는 출장원이나 군인 등 대상자들을 유혹한다. 그들은 대상자들을 자기가 거처하는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매음을 하고, 그 대가로 그 집을 먹여 살린다. 그렇지 못한 여자들은 역전 앞 공원의 한적한 곳 아니면 아파트 복도나 창고 뒤에서 매음을 한다”⁸⁰⁾

75)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의 결혼을 성이 도구화된 계약관계라 비판하면서, 북한은 매매춘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고 선전하여 왔다.

76) 당시 부화(간통)사건이 더욱 만연하게 된 또 다른 요인은 1980년대부터 부화사건으로 해직된 자들이 복직되고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간통이나 강간 등 치정사건은 살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77) 매춘은 “사회주의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 8 장 사회주의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제258조-제277조)에는 불량자행위죄, 껌싸움죄, 매음죄, 미성인 범죄추진 죄, 도박죄, 미신행위죄 및 조장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78) 대기숙박업이란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대부분 상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비합법적인 업종으로, 대기숙박업을 하는 주민들은 부정기적으로 운행되는 열차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편의 제공을 제의하면서 매매춘을 한다.

79) 고성호, “북한주민의 범죄와 이탈”, 138-139면 참조.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 은덕원 목욕탕은 외화벌이 일꾼·당간부·화교·중국동포·장사꾼들의 매춘장소로 악용되고 있다고 한다.⁸¹⁾ 이에 따라 2008년 8월경 평양 사동공원에서 여성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경각심 차원에서 매춘 및 국가재산 횡령 여성들을 공개 재판하고,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연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도 당 간부 및 기업소의 간부들이 부하직원들의 승진이나 당원 입당 등을 미끼로 강간이나 강제 성추행, 부화(간통)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처녀들이 군관과 결혼해 도시로 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인해 인민군과 농촌 처녀들 간의 간음·강간사건이 빈발하게 발생⁸²⁾하고 있다고 한다.

라. 위조 화폐⁸³⁾

위조 화폐 범죄는 북한형법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형법 제 99조, 제100조)

그림 2 위·변조 지폐



<북한 돈 1천원 지폐>

<위·변조 지폐>

에⁸⁴⁾ 해당한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최근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추목동

소재 ‘남강판매소’⁸⁵⁾ 등에서 물품 거래시 위·변조 북한 지폐들이 자주 발견되고

80) 권혁, 『고난의 행군』, (서울: 정도출판사, 1999), 98면.

81) 은덕원 목욕탕은 회령시 인민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은덕원 내 목욕탕은 남·여 각 4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중탕(2개실)과 독탕(10개실)으로 매일(13:00-22:00) 영업을 실시한다. 은덕원의 명칭은 김정일의 은덕을 입어 새로 만들게 된 시설을 의미한다. 이중 독탕은 1회 사용료가 대중탕(200원)에 비해 고액(800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제한이 없고 당국에서도 묵인하고 있어 주로 외화벌이 일꾼·당간부·화교·중국동포·장사꾼들이 매춘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82) 이러한 요인은 농촌지역 젊은이들의 이농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83) 위조 화폐 범죄는 북한형법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형법 제99조, 제100조)에 해당한다.

84) 2004년 형법 “제5장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범죄”(제89조-제192조)에는 국가재산 절도 및 횡령죄, 화폐 위조죄 및 사용죄, 외국화폐매매죄, 밀수죄, 수출입질서위반죄, 량정질서위반죄, 상품판매질서위반죄, 교통사고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위·변조 지폐들은 기존 달러·인민지폐들과 달리, 컴퓨터로 제작된 북한 돈 5천원권(최고액권)이 대부분으로, 북한 돈 1천원의 ‘1’자를 ‘5’자로 단순변조하고 진폐와 색상 차이로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어 비교적 현장적발이 쉽다. 위·변조 지폐 거래 적발시 장마당 담당보안원들이 보상없이 현장에서 압수 후 출처·유통경로 등을 탐문수사하나, 위폐 사용이 전역에 걸쳐 만연되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마. 마약범죄⁸⁶⁾

북한은 자강도, 양강도 지역 등에서 소위 ‘백도라지 농장’에서 양귀비(아편)를 재배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아편 중 20% 정도는 북한 내 의료용으로 공급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노동당 35호실⁸⁷⁾과 39호실⁸⁸⁾에서 외화벌이용으로 밀수출되고 있다. 마약 밀매금

85) 2004년경 설립된 남강관매소는 부지 천여평에 1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중국 등 수입 상품을 유통하는 대형 할인점이다.

86) 북한은 1970년대 말부터 정권차원에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함경도를 비롯하여 양강도·황해도 등 산간지대에서 비밀리에 양귀비를 재배하여 마약을 생산·밀매해 왔다.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북한이 1970년대부터 아편장사를 시작했던 것으로 분석했다(정원경, “북한은 국제범죄 종합 백화점” 『주간동아』 546호, 서울: 동아일보사, 2006.8.1, 18-20면). 1980년대 말부터는 동구권의 붕괴와 식량난 등으로 인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자 영변·평양·개성 등지까지 양귀비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하는 등 마약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김정일이 1992년 8월 양귀비 재배사업을 ‘백도라지 사업’으로, 또 100만 달러 이상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백도라지 영웅’ 칭호를 부여하면서 ‘외화획득을 위해 아편을 대대적으로 수출하라’고 지시하자, 내각·국가보위부·인민보안성·인민무력성 등 국가기관이 총 동원되어 양귀비 재배를 관리·감독하여 양귀비 재배 면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아편생산량도 급증하였다. 최근에는 일본 야쿠자·러시아 마피아 등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는 한편, 중국 북경의 신흥 폭력조직에게 자금을 지원, 육성하여 마약밀매 하부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윤영,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129면).

87) 35호실은 북한의 노동당 산하의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중의 하나이다. 북한의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기구는 당 산하에 ‘35호실’과 ‘작전부’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등 4개의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35호실은 일명 ‘조사부’라고도 하며, 주요 임무는 국제 및 남한에 대한 정보수집과 테러공작업무를 담당하는 것 외에도 무역회사를 두고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과거에 35호실이 관여한 주요사건으로는 83년 아웅산폭파사건을 비롯하여 일본인을 가장하여 국내에 침투한 ‘신광수’사건(‘85)과 KAL858기 폭파사건(‘87), 필리핀 국적으로 위장하여 간첩활동을 하다가 검거된 ‘간쑤’사건(96)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노동당 35호실’과 ‘작전부’를 노동당에서 떼어내 인민무력부의 경찰국과 통합해, ‘경찰총국’으로 확대 개편했다

은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충당되며, 마약밀매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인 공로로 ‘영웅칭호’를 받는 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과학자나 의사들까지도 마약의 위해성을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마약을 제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⁸⁹⁾ 북한은 기초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감기·몸살·두통·신경통 등에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마약을 일종의 기초의약품으로 사용하는 실정이다.⁹⁰⁾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은 북·중 국경지역인 함경북도의 경우, 2006년 현재 청장년층의 5% 정도가⁹¹⁾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복용의 심각성은 단순히 변방지역 뿐만 아니라 평양 등 중심지와 직위고하를 불문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마약은 주민들 사이에서 ‘각종 병에特效이 있고, 적당히 사용하면 장수한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도 완치된다’, ‘피로가 가시고 힘이 솟는다’는 등 고급 기호품이나 만병통치약처럼 인식되고 있다.⁹²⁾ 특히 마약 복용을 단속해야 할 보안원(경찰)이나 검사까지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해 마약밀매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⁹³⁾

<마약범죄 사례>

- 2008년 1월 북한 국가과학원 함남 함흥분원 연구사·과학자 등이 불법적으로 마약을 제조·유통시키는 것을 ‘비사회주의 그루빠(그룹)’에서 적발한 바 있다.
- 2008년 6월 함북 청진시 청진시병원원장·제조실과장·의사 등이 중국 마약 밀매조직의 마약 제조위탁을 받고, 마약 원료인 ‘염산에페드린’을 넘겨받아 병원 내에서 마약제조 중 적발된 바 있다.

88) 북한 노동당 39호실은 노동당 중앙위 재정경리부 소속으로 김정일 개인 비자금 조달과 관리 및 당 운영자금을 전담하고 있으며, 당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와 함께 노동당 내 핵심부서로 산하에 ‘대성무역총국’과 ‘대성은행’을 두고 외화를 관리하고 있다.

89) 2008년 1월 북한 국가과학원 함남 함흥분원 연구사·과학자 등이 불법적으로 마약을 제조·유통시키는 것을 ‘비사회주의 그루빠(그룹)’에서 적발한 바 있다. 2008년 6월 함북 청진시 청진시 병원원장·제조실과장·의사 등이 중국 마약 밀매조직의 마약 제조위탁을 받고, 마약 원료인 ‘염산에페드린’을 넘겨받아 병원 내에서 마약제조 중 적발된 바 있다.

90) 함경북도 청진 광산대 학생 45% 정도가 감기·줄음방지 등에 마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전사회적으로 만연한 실태라고 한다.

91) “히로뽕에 찌든 북한 20, 30대男 5%이상 투약”, <동아일보>, 2006년 9월 30일자.

92) 주성하, <동아일보>, 2006년 9월 30일자.

93) 장용훈, <연합뉴스>, 2006년 6월 8일자.

특히, 평양거주 외화벌이 일꾼들은 실적유무와 상관없이 상부로부터 정기적으로 할당된 당자금 납부를 종용받으면서 가족부양 및 사업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부분 만성두통이나 소화불량 등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한다. 외화벌이 일꾼들이 주로 복용하는 마약은 불상 알약, 덴타얼음 등인데, 이 중 가장 많이 유행하는 것은 흰색의 불상 알약으로 1정당 1-2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덴타는 검은색 재질로 담배처럼 말아서 피우는 형태로 흡입하며, 얼음은 불에 태워서 연기를 들이 마시고, 통증이 아주 심할 때에는 포르핀을 구입하여 주사하기도 한다.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장사가 되는 것은 마약밖에 없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상당수 가정에서 마약재료를 직접 구입, 조제하여 장마당이나 암거래상을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⁴⁾

<마약사범 공개재판 사례>

- 2008년 6월 중순 경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마약밀매자 3명과 생산자 2명에 대한 공개재판을 실시하고 생산자는 무기징역, 매매자는 7-10년의 교화형 선고했다.
- 2008년 6월 중순 경 양강도 예산시에서 마약과 금속밀매자 12명에 대한 공개재판을 하고 3명은 무기징역, 4명은 10년 이상 교화형에 선고했다.

바. 사회주의 문화 침해 범죄

북한 형법은 퇴폐적인 문화 반입과 유포 및 행위 죄, 적대방송청취, 유적도굴 및 밀수·밀매죄, 비법아편재배 및 사용 죄, 마약 제조·밀수·밀매죄 등을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1) 자본주의 문화 반입 및 유포 죄

자본주의 문화 반입 및 유포는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⁹⁵⁾ 이러한 범죄는 과거에 없었던 신종범죄에 해당한다. 북한당국이 ‘황색바

94) 2007.3~5월간 입국한 탈북 노동자 등 4명이 최근 북한주민 생활실태와 관련한 진술 내용이다.

람(자본주의 문화사상)’라고 경계하는 ‘퇴폐문화의 반입·유포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⁹⁶⁾

1990년대의 중국조선족 보따리 장사, 식량구입을 위한 월경자, ‘국경 밀무역꾼’,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외교관과 무역관, 해외유학생, 각급 기관의 외화벌이 일꾼에 의해서 ‘자본주의 사조와 문물’이⁹⁷⁾ 유입되자, 주민들의 정치사상성과 혁명성 약화,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체제 비판적 행위가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국경지역에서부터 불어온 ‘황색바람’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남한문화를 차단하는데 앞장서야 할 보위부원들조차 한국 영화를 즐겨 시청하고 모방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 북한주민들이 애창하는 남한 가요로는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⁹⁸⁾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비롯하여, ‘소양강 처녀’, ‘돌아와요 부산항과 허공’ 등이 있다.⁹⁹⁾ 북한당국은 2001년 ‘두만강’, ‘홍도야 울지마라’ 등을 ‘계몽기 가요’라는 미명하에 해금하였는데, 이는 북한주민들이 남한 가요를 애창하는 현실 속에서 물리적 단속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20-30대의 국가안전보위부원들 간에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상우 노

95) 2004년 형법의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제193조-제218조)에는 퇴폐적인 문화 반입 류포죄,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적대방송청취, 인쇄물, 유인물, 수집, 보관, 류포죄, 역사유적도굴죄, 역사유물 밀수 및 밀매죄,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비법마약사용죄, 마약밀수, 밀매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96) 1999년 6월 1일 당 기관지 로동신문과 당 이론잡지인 근로자의 공동논설로 발표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원자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제국주의자들이 퍼트리는 황색바람”이므로,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비사회주의적 현상, 자본주의적 요소는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그 싹부터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개혁이나 개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97) 당시 음성적 시장경제의 활성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팽배, 집단주의 정신 약화, 사회적 일탈행위 급증, 정권에 대한 불신 등은 자본주의 사상이 침습된 결과로 볼 수 있다.

98)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정일은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를 즐겨 부르고, 북한 주민들은 원래 가사를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자주 위해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그댈 못 잊어/ 그대 작은 가슴에/ 빛을 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요,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로 개작하여 부른다고 한다(밀줄 필자).

99) 최근 20-30대의 보위부원들은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상우 노래) 등의 흘러간 남한 가요를 즐겨 부르고, 상호 호칭시 남한말투를 사용하는 등 한국문화 동화(同化)현상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래) 등의 흘러간 남한노래를 즐겨 부르고, 상호 호칭시 남한말투를 사용하는 등 한국문화 동화(同化)현상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둘째, 남한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겨울연가’, ‘가을동화’, ‘목욕탕집 남자들’, ‘불멸의 이순신’ 등은 북한 주민들이 많이 본 대표적인 연속극이다.¹⁰⁰⁾ 최근 북한 주민들은 중국을 오가는 장사꾼들에게 각종 CD를 사서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도 하는데, ‘친구’, ‘장군의 아들’, ‘조폭 마누라’ 등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영화로 알려지고 있다.¹⁰¹⁾ 지난 9월 20일 평안남도 평성시 연봉동 24반에서는 두 세대를 가택 수사해 미국 영화와 중국 영화 ‘황제의 딸’ 등의 CD와 녹화기를 회수했다. ‘불량 녹화물’을 시청한 주민 4명과 구입자 1명이 체포되어 법적 심문을 받았다고 한다. 109호 지휘부의 단속 결과, 올해 하반기 불량 녹화물을 시청하다가 단속된 사람들 중에서 20명 정도는 교화소에 갔고, 나머지는 시 노동단련대에 보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¹⁰²⁾

셋째, 최근 여학생들 사이에서 쌍거풀 수술, 입술문신, 컷볼 뚫기 등이 유행하고 있다.¹⁰³⁾ 이와 관련하여 회령시 ‘청년동맹’ 및 ‘511 상무’에서 황색바람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황색바람이 많은 여중생과 젊은 여성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근본적인 차단은 어려운 실정이며, 적발되어도 뇌물 제공 등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 도박과 미신¹⁰⁴⁾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돈과 물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물질만능 사상에 젖어든 주민들은 돈을 쉽게 벌수 있는 수단으로 쉽게 도

100) 고성호, “북한주민의 범죄와 이탈”, 136-137면.

101) “술한 단속에도 한국 영화 열풍 확산”, 오늘의 북한소식 제61호,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2007.3.8, 6면.

102) “평성, 불량 녹화물 집중 단속”, 좋은벗들, 2009년 11월 3일자.

103) 함북 회령시 여중생들 사이에서는 시술비용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쌍거풀 수술(3천원)·입술문신(5천원)·컷볼 뚫기(귀짱, 2천원)를 비롯하여 머리 매직(5천원) 및 찌마(몸에 달라붙는 옷) 착용이 유행되고 있다고 한다.

104) 도박과 미신은 북한 형법의 “사회주의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박에 빠지고 있다. 도박은 카드와 화투를 사용하는데, 카드는 ‘주패’라고 하여 일상화된 오락이다. 화투는 1970년대 금지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 중국 조선족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도박에 주로 사용하는 수단은 카드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후 종교나 미신을 엄격히 통제하여 왔다. 종교행사는 일부 평양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종교인들은 당의 허락 하에 종교행사에 참석한다.¹⁰⁵⁾ 지방에서는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미신을 믿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신은 암시, 카타르시스, 설득, 상담, 위안 등을 통해 인간의 갈등과 불안을 해소해주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수록 미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1990년대 북한은 지속된 자연재해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과 북-미간 갈등으로 인한 체제위기가 고조되자 주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미신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되었다.

점쟁이들은 대부분이 할머니들이다, 점을 보는 이유로는 운세, 건강, 장사와 관련된 것들이다. 몸이 아픈 경우 점쟁이를 찾아가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장사꾼들은 장사하기 좋은 시기를 묻는다. 북한사람들은 ‘허가받은’ 점쟁이와 그렇지 못한 점쟁이를 구분하고 있다. 허가받은 점쟁이는 당간부나 권력자들의 점을 맞춘 적이 있는 점쟁이들이다. 점치는 행위를 단속하도록 지시가 내려오지만, 당간부의 운세를 맞춘 점쟁이들은 신통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하지 않는다. 복채도 다른 점쟁이들보다 비싸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점쟁이들은 복채도 쌀 뿐 아니라, 단속대상이 되기도 한다. 평양에서는 미신을 믿으면 ‘추방되기 때문에’ 미신을 믿지 않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미신행위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¹⁰⁶⁾

105) 북한 종교단체 주도자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1990년 4월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687명) 가운데 종교단체 대표 6명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기독교연맹’ 위원장 강영섭과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박태호는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위원이었으며, ‘조선천주교인협회’ 위원장 장재철 역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이었다. 이들은 당의 지시를 따르는 정치인들이다.

106) 고성호, “북한주민의 범죄와 이탈”, 142면.

3) 문화재 밀매

북한은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문화재를 도굴하여 밀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5월 초 개성시 보위부는 고려청자 밀매자를 체포하여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고려무역회사 노동자들과 개성역 철도기관사 한 명으로 지난 해 10월부터 고려청자와 각종 골동품들을 수집해 국경연선지역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들이 넘긴 고려청자 등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보고, 유통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끝난 뒤 지난 5월 20일, 이들은 '적선'이라는 비관과 함께 각각 교화소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¹⁰⁷⁾

사. 권력형 범죄

권력범죄는 북한형법의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¹⁰⁸⁾에 해당한다. 권력형 범죄에는 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뇌물수수나 부하직원과의 성관계, 몰자유용, 사례금 착복 등이 있다. 탈북자들은 ‘돈 없이 되는 일도 없고, 돈 가지고 안되는 일도 없다’라 할 만큼 뇌물수수가 만연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여행허가증과 건강진단서 발급, 상급학교 진학, 직장 재배치와 진급, 주택배정, 암시장 거래, 무단이동, 교통법규 위반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이권행위나 뇌물수수가 이루어진다. 권력형 비리는 북한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간접 확인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일부 준비되지 못한 간부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인민들로부터 유리되고 특수계층화되고 있다”거나 “간부들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현상은 당이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게되는 해독성과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권력형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107) “개성시 고려청자 밀매매자 무기징역”, <오늘의 북한소식 284호>, 좋은벗들, 2009년 6월 23일자.

108) 2004년 형법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제219조-제257조)는 직무집행방해죄, 비밀루설죄, 비법국경출입 및 협조죄, 직무태만죄, 뇌물죄, 직권람용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¹⁰⁹⁾

특히 일부 보위부원이나 보안원들은 각종 단속을 빌미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심지어는 범죄자들과 결탁하여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당·보위부·보안성·군 간부들은 국경 밀무역에 은밀히 개입하고 있다. 일부 권력층에서는 국가재산이나 배급 물자를 유용하며 고립대금업을 통하여 부를 형성하고 있다. 여권발급, 도강증 밀매, 검열, 대학입학, 직장배치, 밀무역, 주택배정 등과 관련한 뇌물수수 범죄와 사례금 착복 등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첫째, 여권 발급과 관련한 뇌물수수이다. 최근 북한은 여권(주민국경통행증)¹¹⁰⁾ 발급과 관련한 뇌물상납 등의 비리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정상적인 여권발급 비용은 35유로(북한 돈 10만원)¹¹¹⁾ 정도이지만 각 단계마다 뇌물제공이 필수적이라 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방문 주민들이 귀국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되자, 여권 발급이 상당히 어려워져 뇌물 제공액수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방문 후 귀국시에는 보위부와 외사지도원에게 TV나 녹화기 등 생필품을 한 가지 이상 선물해야 한다고 한다.

표 3-2 여권발급 뇌물 액수

년도	2006	2007	2008	비고
뇌물 액수(북한 돈)	50만원 선	70만원 선	120만원 선	2008년 현재 쌀 1kg 약 2,500원 선 거래

109) 권영경 외, 『북한이해 2000』, 369-370면.

110) 재중 친척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경우, 해당 시·군 보위부에 접후 한 후 상급 도보위부의 심사서류를 거쳐 평양소재 국가보위부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여권(주민국경통행증) 발급 기준은 보위부에서 관리중인 개별 주민등록상에 중국친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직계와 사촌에 한해 발급하며,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이어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차 여권 발급 후 3년이 경과해야 재발급을 한다.

111) 2007년 현재, 미국 달러와 북한 원화의 가치는 1달러 당 141원에 해당된다. 1985년, 1달러 당 2.4원에 비하면 20여년 만에 약 70 배 가까이 가치가 하락된 것이다. 북한 내 암시장이나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비공식 환율은 1985년, 1달러 당 50원에 거래되던 북한 돈은 2007년 1달러 당 3000원으로 역시 20여 년 전에 비해 50~60분의 1 이상 추락했다. 그리고 1985년 북한 돈 1원에 한국 돈 358원과 바꿀 수 있었으나, 2007년에는 60분의 1 가까이 북한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6원 밖에는 바꿀 수가 없다. 2007년 현재 북한 일반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은 3,000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고 쌀 1kg은 약 1,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둘째, 도강증을 밀매하는 유형이다. 최근 함경북도 도보위부 반탐과는 기존의 합법적인 '도강증'(국경인접 중국지역 여행증명서) 외에 자체적으로 '도강증'을 만들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돈 50-100만원을 받고 암암리에 밀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강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두만강을 도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 복송되어도 처벌이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셋째, 구루빠 검열관들의 뇌물수수 유형이다. 북한은 밀수·마약거래·인신매매·비법도강 등이 잦은 함북회령시 등 국경연선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비사회주의 구루빠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당·보위부·보안서·검찰소·재판소·청년동맹·직업총동맹·여맹 등으로 구성된 이들 비사회주의 구루빠 검열관들은 대부분 차출과 동시에, 최소 개인당 100만원(인민폐 2,500원 상당)을 버는 것을 목표로 잡고 단속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한다.

넷째, 교화형을 회피하고자 뇌물을 거래하고 있다. 최근 북한주민들은 강도·강간·도강 등 범죄행위로 인해 재판소에서 교화형이 선고되면서 시·군 인민병원 담당의사에게 약 50만원 가량의 뇌물을 주고 간염·결핵 등 감염성 질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안서 감찰과에 제출하여 병보석을 선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때 보안서장·정치위원 등에게 뇌물(교화형량에 따라 100-300만원) 상납 후 병보석을 청탁하게 된다. 병보석은 집에서의 요양 목적으로 선고 받았기 때문에 거주지를 벗어나는 외출이 금지되며 인민반장 등이 수시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다섯째, 사례금을 착복하는 유형이다. 북한의 2004년 개정된 형법 제274조에서는 공무원이 거래과정에 받았거나 생긴 대량의 사례금 또는 이득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는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외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기타 물질적 사례에 대해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신고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례금은 신고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대학입학, 직장배치, 밀무역, 주택배정 등과 관련한 뇌물수수 범죄와 관련한 예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¹¹²⁾

첫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뇌물수수 관행이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과거 북한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직통생’ 또는 ‘직발생’이라는 은어로 지칭할 만큼 특혜로 여겨왔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해당되지만, 일반적으로 성적과 출신성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에서 부여하는 특혜였다. 그러나 1990년 후반에는 일부 학부모들이 시행정경제위원회(현 인민위원회) 모집과에 직접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대학에 입학시킨다. 처음에는 술 한 병, 담배 한 보루 등 ‘소박한’ 뇌물이었지만 뇌물을 주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뇌물의 액수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좋은 직장에 배치받기 위한 뇌물상납 관행이다. 직장배치와 관련한 뇌물상납은 1980년대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보위부나 보안성 등 권력기관을 선호했고, 당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뇌물관행은 1990년대 경제난을 거치면서 보다 노골화되고 뇌물액수가 늘어났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선호하는 직장은 ‘힘 있는 기관’에 들어가기 보다는 대외무역일꾼, 외향선원, 요리사, 판매원 등 물자나 돈을 만질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며,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권력자에게 뇌물을 상납하게 된다.

셋째, 국경지역에서 밀무역을 하기 위한 뇌물상납 관행이다. 조·중 국경지역에서 밀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상납해야 한다. 1990년대 하더라도 1-2회 걸쳐 뇌물을 상납하면 거의 해결되었으나, 2000년이 되면서 월경자 단속 강화, 감시초소 증가, 내륙지역에 초소 신설 등으로 밀무역을 하기가 어려워지자, 뇌물상납 회수와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다. 국경을 5-6차례 넘나들었던 한 탈북자는 과거 국경을 한번 통과하는데 10-20달러 정도의 뇌물을 상납했지만, 2000년이 되면서 ‘1,000달러 정도는 주어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¹¹³⁾

넷째, 주택배정 및 교환과 관련된 뇌물상납 범죄이다. 북한의 경우 주택은 국

112) 고성호, “북한주민의 범죄와 이탈”, 144-146면 재정리.

113) 고성호, “북한주민의 범죄와 이탈”, 145면 재인용.

가소유로 주민들은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주택 사용권은 당국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다 좋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뇌물을 상납하게 된다. 식량, 의복, 신발, 치약 등 배급용 생필품이 상당부분 착복대상이 되고 있다. 식량의 경우 창고에 배급할 쌀이 있지만 주민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행방 불명이 되기 때문에 이들 몫을 배급 담당자들이 챙기는 방식이다.

아. 병역비리 죄

병역비리¹¹⁴⁾ 죄는 형법 “제 4 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해당한다.¹¹⁵⁾ 북한군 내부에서도 혹독한 노력동원과 식량난에 따른 영양실조 현상이 급증하자 현역복무 기피 현상이 확산되어 ‘제대허가’와 관련된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한다.¹¹⁶⁾ 조기제대 비리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생활곤란 제대’¹¹⁷⁾는 입대와 제대를 관찰하는 각 부대와 참모 등에서 담당하는데, 약 200달러 상당 뇌물이 제공되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둘째, ‘감정제대’의 경우는 군단급 군의소 법의과 군의관들이 병을 이유로 제대를 신청하는 군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제대감정을 해주는데, 환자라 해도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감정제대’ 판정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며, 환자인 경우

114)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표방한 가운데, 가용자원을 군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등 군 배려정책을 지속해오고 있으나, 식량난이 장기화되면서 군에까지 식량난이 심화되고, 고된 군생활을 거쳐 당원이 되어도 경제적으로 그다지 이득이 없어 징집대상자들의 군 기피현상이 만연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2003년 제11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민군사 복무법’을 채택하고, 2005년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으로 17세 이상 남자는 무조건 군복무해야 하는 의무병제를 강화하였다. 북한 헌법 제86조는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115) 북한 형법 “제 84 조(기피자, 탈영자 은닉죄) 군사복무동원 기피자, 탈영자라는 것을 알면서 숨겨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116) 북한군의 복무기간 만기 전 제대에는 ‘가정생활곤란 제대’, ‘감정제대(우리의 의가사제대)’, ‘영예군인(우리의 상이군인)’ 판정 등이 있다.

117) 가정생활곤란 제대는 군 북한군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복무자의 부모 등의 병환 등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경우 심사 후 일시 제대 조치를 취하는데, 제대요인이 해소되면 부대로 복귀하도록 되어있다.

50-100달러, 환자가 아닌 경우는 200달러 정도의 뇌물을 제공해야한다고 한다.

셋째, ‘영예군인’¹¹⁸⁾ 판정의 경우도 군단급 군의소 법의과 군의관들이 담당하는데, 영예군인증도 받고 국가지원이 많은 높은 급수를 받기 위해서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 내부의 식량난 지속, 10년 이상 군복무의 장기화 등으로 탈영병까지 증가하는 등 군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입대·제대 등 병역관련 비리가 북한군 내부에서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118) 영예군인은 군 복무기간에 상처를 입고 제대해 국가의 보로(지원)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IV. 북한 보안(경찰)기관의 범죄대책

최근 북한은 경제난과 더불어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각종 범죄를 척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김정일은 교시를 하달하고 인민보안성(경찰청) 등公安기구는 범죄단속 포고령과 지시를 비롯하여 범죄단속 기구를 조직하여 운용하고 있다.¹¹⁹⁾

1. 보안기관의 범죄단속

가. 범죄단속 포고령과 지시

1) 양곡 절도 및 상행위 금지

북한은 1990년 중반 주민들의 식량약탈 행위가 만연하자, 전국에 “양곡 및 가축 강탈자를 즉결 처형하라”(1995.12)는 포고령을 내리고 쌀 절취범과 밀수범 등 70-80명을 ‘사회 불량자’로 분류하여 궁터와 강변에 수천 명의 주민들을 모아 놓고 ‘인민재판식 처형’을 집행하는 등 식량절도 행위를 예방하고자 했다.¹²⁰⁾

사회안전부(2000.4 인민보안성으로 개칭)는 “남알을 훔치고 팔며 허실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할데 대하여”(1997.8.5)라는 포고령을 통해 ‘남알을 훔치는 행위를 절대하지 말라’, ‘양곡을 가지고 장사하는 행위를 절대하지 말라’, ‘양곡 탐오(貪汚) 약취, 허실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곡식 절도, 양곡거래, 양곡약취와 허실행위에 대해서 직위, 공로, 소속에 관계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법에 따라 최고 총살형에 처할 것임을 공포한 바 있다.

119) 최근 북한은 국제범죄 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마약, 위조지폐 등과 관련하여 당국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0) 최덕성, “통일보다 더 시급할 일”, <http://blog.daum.net/gajach>, 2007년 5월 7일 검색.

표 4-1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 포고령

량곡을 훔치고 팔며 허실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량곡은 인민들의 첫째가는 생활수단이며 가장 중요한 전략물자이다.

올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영농전투를 힘있게 벌임으로써 긴장한 식량 문제를 풀고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극단한 개인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제살공리만 하면서 군인이 피땀흘려 지어놓은 귀중한 낱알을 훔치거나 허실하여 량곡을 가지고 상적행위를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나라의 쌀독을 침해하는 반국가적범죄행위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립압살하려는 적들을 도와주는 역적행위로서 준엄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

사회안전부는 공화국정부의 위임에 따라 낱알을 훔치거나 팔며 허실하는 행위를 철저히 없애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1. 낱알을 훔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낱알을 포전과 무지, 량곡장, 창고(창자)에서 훔치는 자는 엄격히 처벌하며 전량을 변상시킨다. 특히 엄중한 자는 총살한다. 량곡을 경비원이 훔치거나 경비원과 공모하여 훔치자는 엄중히 처벌한다. 포전과 낱알무지, 탈곡장, 창고(창자)들에 대한 자체 경비조직과 경비근무수행을 무책임하게 하여 량곡을 침해당하게 한자들도 법적으로 처벌하며 량곡을 경비원이 훔치거나 경비원과 공모하여 훔치자는 더 엄중히 처벌한다. 량곡을 훔치다가 피해당한자는 상소할수 없다.

2. 량곡을 가지고 장사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

부정축재를 목적으로 많은 량곡을 가지고 장사행위를 한자는 총살에 이르기까지 엄중히 처벌한다. 국영 및 협동 농장들과 부업자들에서 량곡을 훔쳐다 농민시장과 공공장소, 뒤골목에서 팔고 사거나 물건과 바꾼자는 법적으로 처벌하며 거래된 낱알과 돈 물건은 회수한다. 량곡을 가지고 고리대행위를 한자도 엄격히 처벌하며 고리대로 주고 받은 량곡과 물자 돈은 전량 몰수한다.

3. 량곡을 탐오 락취, 허실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량곡을 생산량에서 무락시킨자와 《사업》, 《지원》, 《손님접대》, 《물물교환》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비법처리 하도록 조직한자와 집행한자, 직권을 악용하여 때먹은자, 공모 결탁하여 탐오량비한자들은 총살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하며 무락시켰거나 탐오락취한 량곡전량은 몰수 또는 변상시킨다.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 농장원들과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주민들 사이에 서로 비료, 농약, 농기계, 기름, 부속품, 짐짐승 등을 양곡과 바꿈질하는자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거래된 량곡과 물자는 몰수하며 가을에 량곡을 받기로 한 것은 일체 무효로 한다. 가을 걷이와 탈곡, 보관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량곡을 류실 부패, 변질시킨 책임있는자도 법적으로 처벌한다.

4. 모든 공민들은 숭고한 애국, 애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량곡을 훔치거나 량곡장사를 하며 탐오락취, 허실하는 자들을 예리하게 살피고 제때에 신고하라.

5. 이 포고를 어긴자는 직위, 공로, 소속에 관계없이 현행범으로 단속체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부

1997년 8월 5일(일출 필자)

2) 마약 및 위폐 단속

북한은 마약 복용자가 급증하자, 김정일은 “그 어느 특수단위를 막론하고 아편 재배 및 마약 밀매를 금지하라”(2002.3)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개정형법(2004)은 마약사용자에 대해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마약 제조 및 밀수, 밀매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2006년 인민보안성이 마약단속 ‘포고령’¹²¹⁾을 발표했음에도,¹²²⁾ 마약투약자가 중학생 등 연소자 층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북한당국은 인민반 회의를 통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사고팔지 말며,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마약을 못하도록 잘 교양하라”는 지시를 하달한데 이어서, 보안원들은 인민반을 돌며 “자녀들이 마약에 손대지 못하도록 잘 통제하고, 잘못될 경우 부모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까지 받았다고 한다.¹²³⁾

북한당국은 마약문제와 함께 각종 위폐가 확산되어 시장을 교란시키자, 개정 형법(2004)을 통해 ‘화폐 위조죄(제99조)¹²⁴⁾ 및 사용죄(제100조)’를¹²⁵⁾ 신설하여 화폐위조에 가담하면 종신형과 극형까지 처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노동당 중앙위원회¹²⁶⁾는 각 지방 당 조직에 하달한 문건을 통해 “가짜돈(위폐)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2006.3.26)을 지시한 바 있다.¹²⁷⁾

북한당국이 마약 및 화폐위조 범죄자에 대해 극형이라는 처방을 내린 것은 대내적으로는 사회병폐 요인을 근절시켜 체제를 보위하고, 대외적으로는 마약과 위폐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¹²⁸⁾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미진한 것으로 탈북자들은 진술

121) 인민보안성은 2006년 3월 1일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마약거래 행위 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함에 대하여”라는 포고령을 통해 “마약을 비법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마약에 대한 보급, 취급, 이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한편, 이 포고를 어기는 엄중행위를 한 자는 직위와 공로, 소속에 관계없이 사형에 처하고, 가족은 추방한다고 밝혔다.

122) “北 포고령 마약 생산·수출·거래 최고 사형”, <연합뉴스>, 2006년 3월 18일자.

123) 최근 입국(2007.3-5)한 탈북자 김00 등 4명이 진술한 내용이다.

124) 북한 형법 제 99 조(화폐위조죄): “공화국 화폐와 공화국 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를 위조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125) 북한 형법 제 100 조(위조화폐사용죄): “위조된 화폐라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126) 노동당 중앙위는 북한의 주요 정책과 노선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기구이다.

127) “北노동당 중앙위, 위폐유통 단속 지시”, <연합뉴스>, 2006년 5월 3일자.

128)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 926국에서는 화폐제작 및 위폐를 제작한 후 해외에서 진폐로 교환하여 당 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26국은 인민보안성 소속이나 당중앙위원회의 지시를 받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주요 상표를 인쇄 제작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 산하 ‘2월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주민들의 마약복용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마약밀매가 성행하면서, 마약을 조직적(국가적)으로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마약 밀매국’¹²⁹⁾으로 알려지게 되자, 2007년 6월 26일 북한의 중앙 TV는 북한 보건성 국장 한수철의 말을 인용해 ‘국제마약협약(2007.3)’¹³⁰⁾ 가입과 마약제조·밀매를 통제하는 국제기구와 공조할 것임을 밝히는 한편, 북한 보건성은 2008년 세계마약퇴치의 날(6.26)을 맞이하여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통해 ‘유엔기구와 밀접한 연계하에 마약통제·관리사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는 등 마약밀매국이라는 대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표 4-2 인민보안성 포고문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마약거래 행위 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함에 대하여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비법적인 마약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저해를 주고 우리 인민의 혁명적식을 마비시켜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일심단결된 정치사상적 진지를 허물어 버리려는 반국가적 파괴암해 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은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1. 전력선, 통신선(가벨 포함)을 끊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전력선, 통신선을 끊어가거나 훔쳐 팔아먹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유색금속을 몰래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은 전력선, 통신선을 비롯한 유색금속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품을 만들어 팔거나 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전력, 통신부분의 일군들은 전력, 통신시설과 설비들에 대한 관리와 순찰, 경비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

2. 마약을 비법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마약을 팔고사거나 비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은빛회사’는 해외에서 화폐 제작에 필요한 제지 및 시약 구입과 ‘62호 공장’에서 제작한 위조 화폐 교환을 담당하고 있다. 926국은 ‘2월 은빛회사’와 ‘평양 상표인쇄공장’(일명 62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9) 미국 국제 외교전문 학술지 “포린폴리시(FP, Foreign Policy)” 2008년 7·8월호는 세계 최악의 지도자들에게는 각종 합법·불법 무기거래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생명선(Lifeline), 즉 정권 유지 수단이라고 설명하면서, 김정일은 각종 위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때 미사일을 팔아 외화를 벌어들였으나, 지금은 마약거래·상아 무역·가짜담배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특히 100달러 및 50달러짜리 위조지폐인 ‘슈퍼노트’의 배후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이 김정일 체제를 떠받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30) 북한은 2007년 3월 19일 3개의 국제마약협약(단일마약향정신성물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가입했다.

마약원료를 비법적으로 재배하거나 마약을 제조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마약을 비법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마약에 대한 보관, 취급, 리용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
 3.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비법적인 마약거래 행위를 예리하게 살피고 제 때에 법기관에 신고하라.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거나 방해하며 신고자에게 복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4.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비법적인 마약거래 행위를 한자는 자백하라.
 이 포고가 발표된 후 10일안으로 자백한자는 관대히 용서한다.
 5. 이 포고를 어기는 엄중행위를 한 자는 직위와 공로, 소속에 관계없이 사형에 처한다.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를 조직한 자, 집행한 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하며 가족은 추방한다.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에 공모한 자, 방조자도 엄중히 처벌한다.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를 한자가 속해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보호자도 해당한 책임을 진다.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에 리용된 운수수단과 기재 돈과 물자는 소속에 관계없이 무조건 몰수한다.
 이 포고집행을 방해하거나 반항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6. 이 포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역 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무력, 특수기관 포함)와 국민들에게 적용 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주체 95(2006)년 3월 1일

3) 자본주의 침습 차단

북한 당국은 자본주의 문화가 확산되자 이를 ‘얼빠진 사고방식’ 또는 ‘썩어빠진 부르주아적 유행’으로 비판하는 한편, ‘군대문화 따라 배우기 운동’과 ‘모기장 교육’을 통해 ‘자유화바람’을 차단¹³¹⁾하여 주민들의 사상이탈을 방지할 것을 지시했다.¹³²⁾

조선노동당은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데 대하여”(2002)라는 간부용 ‘학습제강’¹³³⁾을 통해 자본주의 사상의 침습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반대 배격”해야 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¹³⁴⁾ 김정일은 2006년 여름 평안북도 신의주 방문시 학생들의 ‘한국 풍 옷차림새’ 등을 본 후 학생들 문화에 대한 제재 내용의 방침을 하

131) 자본주의 사상을 막아 내는 모기장을 빈틈없이 쳐서 차단해야한다는 의미이다.

132)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김정일 선집 (12)』, 서울: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265-266면.

133) 제강은 강연이나 강의의 기본내용을 체계 잡아 적은 글을 의미한다(『조선말대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440면.

134) 학습제강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데 대하여”(조선로동당출판사, 2002)는 16절지 16쪽 분량의 1시간 30분짜리 간부용 학습지침서이다.

달한 바도 있다.¹³⁵⁾

북한당국이 체제 내의 자본주의 사상의 침습을 막고자 ‘당적인 총공세’를 벌여야 할 것을 지시한 것은 ‘사회주의 혁명 건설’에서 자본주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타도해야 할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 전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상문화는 반드시 분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¹³⁶⁾ 북한의 문학잡지 ‘조선문학’(2000년 8월호)은 ‘토막상식’란에 ‘트로이 목마’, ‘노아의 홍수’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여 ‘제국주의 사상문화’의 침투를 경계하는 등 ‘반제투쟁’을 독려하고 있다.¹³⁷⁾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철저히 고수하고 견지하여온 우리 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철두철미 진행하여야 한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 나라를 압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상문화적공세를 들이대는데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그 어떤 고립, 봉쇄,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가 택한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진진하고있는 우리 나라를 더는 굴복시킬 수 없게 되자 지금 원수들은 반동적인 부르주아사상문화를 침습시켜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 제국주의반동들이 불어대는 황색바람은 특히 문학예술분야에 더욱 교활하고 악착하게 덤벼들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적들의 반혁명적공세에 혁명적공세로 맞서야 하며 적들의 비렬한 책동을 분쇄하여야 한다.¹³⁸⁾

4) 외화벌이 및 밀수단속

최근 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의 지시(2007.2)에 따라 함경북도 국경연선지역¹³⁹⁾을 대상으로 불법 외화벌이 회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전격 해산시킨 데 이어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일꾼들에 대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무

135) 동 방침은 “옷차림이 모두 우리나라 학생답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퇴폐적인 노래를 부르거나 영화를 보지 말라”, “생일파티를 금지한다”, “거리에서는 절대 교복을 입고 다녀라”는 등의 내용이다. 이후 규찰대청년동맹들의 감시활동이 강화되었으나, 대부분 학생들은 적발되지 않을 정도로만 방침에 순응하고 있다.

136) 위의 글, 94면.

137) “최길상, “우리 식대로 창작하는것은 주체문학의 위력을 강화하는 근본담보”(『조선문학』 1998.1호,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4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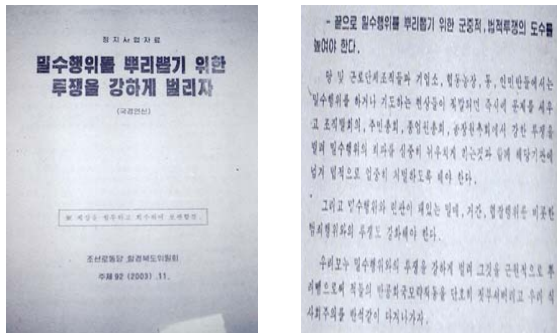
138) 최길상, “우리 식대로 창작하는것은 주체문학의 위력을 강화하는 근본담보”(『조선문학』 1998.1호,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44면.

139) 연선은 일정한 지역을 따라 그 옆에 길게 위치하여 있는 곳 즉, 국경연선은 국경경계 지역을 의미한다.

역회사들이 회사자금을 마련하고자 얼음(히로뽕)을 판매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해왔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약 220여명의 주요 일꾼들을 연행해 자금의혹 및 정보유출 등의 문제를 집중 수사한 결과 60여명을 구속 수감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 중 10여명을 간첩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평양으로 압송한 바 있다. 평양 압송자들은 대부분 중국 회사와 거래하면서 중국 공안 당국에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¹⁴⁰⁾

국경연선지역을 대상으로 “밀수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리자

그림 3 반체제 구호 사진



▲ 김만철씨가 입수한 북한당국의 비밀문건<사진: RENK제공>

(국경연선)”라는 ‘정치사업 자료’(조선노동당 함경북도위원회, 2003.11)와 “이색적인 록화물과 출판선전물들을 리용류포시키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자”는 ‘국경연선 주민정치사업 자료’(조선노동당 출판사, 2003.11)를 통하여 “밀수행위는 나라의 안전과 인민의 이익

을 해치는 엄중한 범죄 행위”(정치사업 자료)로 “밀수 행위를 막기 위해 비합법적인 휴대용 전화기의 사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국경연선 주민정치사업 자료)고 지적하면서, CD녹화기와 CD영상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일체 단속을 지시하고 있다. 이는 밀수를 통해 유입되는 자본주의 문물이 사회주의 사상을 약화시킨다는 판단 하에 주민들의 내부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¹⁴¹⁾

140) “외화벌이 회사 일대 검거 선풍”, 오늘의 북한소식 제62호,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2007.3.16, 1면.

141) 2008년 11월부터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62세)의 특별지시로 내·외 정보 유출입과 관련된 불온분자(반당·반혁명 분자) 색출작업을 은밀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동 색출작업은 2009년 2월까지 중 휴대전화 사용 가능한 중국 접경 국경도시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한 바 있다. 주된 색출대상은 중국 체류 탈북자, 한국정착 탈북자들과 은밀하게 접촉하거나 중국을 왕래하며 돈 전달 심부름 등을 돕고 있는 주민이라고 한다. 북한당국의 이번 색출작업은 내·외

5) 국경 경비 강화

북한당국은 여성·복송 제일교포·가족단위의 탈북시도 증가와 마약·금속 등의 밀매행위가 만연하자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북한당국은 ‘인신매매를 뿌리째 없앤다’는 방침 하에 탈북브로커를 신고하는 군인들에게 표창휴가, 대학진학, 노동당 입당 등의 포상 제도를 실시하면서 국경수비대 대원들은 탈북브로커로부터 돈을 챙기고도 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¹⁴²⁾ 탈북브로커의 공개총살 등 단속강화 등으로 뇌물제공에 필요한 탈북비용이 급상승하게 되자,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크게 감소하여 한국행을 주선하던 중국내 브로커들도 감소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당국은 북·중 국경지역의 국경경비대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2008년 5월부터 진행되었던 중앙당 합동검열에서 국경경비대 간부들의 부정·비리 행위를 적발하여 공개처형, 구속, 생활제대(의가사 제대) 조치를 했다. 특히 국경경비대 간부들의 부정·비리 근절을 위해 주요 간부들을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호위사령부’¹⁴³⁾ 출신으로 대폭 교체하였다. 또한, 국경경비대 여단·대대 지휘부에 ‘호위사령부’ 검열조가 상주하여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등 국경경비대는 호위사령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경경비대가 호위사령부 출신으로 바뀌면서 도강자에게 발포하는 등 삼엄한 경비로 주민들의 북·중 국경지역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부 정보의 유·출입이 탈북자들과 연계된 사람을 통해 주로 중국을 경유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 행정부장인 장성택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등 사정·사법기관을 총괄하고 있다.

142) 북한당국이 탈북브로커를 없애야 하는 시급함 때문에, 탈북브로커의 돈을 받고도 상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교육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상제도는 국경 수비대원들에게 배급주의를 심화시켜 탈북브로커를 신고하는 과정에 온갖 편법과 불법이 조장되고 있다. 국경 수비대원들의 배급주의 현상은 공개된 비밀로 1990년 중반이후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제대 후 결혼과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00만원 벌기운동’을 암암리 전개하여 왔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서는 북한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300만원 벌기 운동’으로 상승했다고 한다.

143) 호위사령부는 김일성·김정일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해 조직된 경호부대이다. 사령관은 2008년 현재 원수 이을설(87세)이다

나. 범죄단속 기구

북한은 최근 각종 범죄가 만연하자 범죄억제 대책으로 1992년부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시·군별로 ‘현지공개재판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반체제 범죄자, 살인, 강도 등 중범죄자에게만 시행하던 공개처형제도를 절도 누범(累犯)자 및 경미한 범죄자까지 확대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주민 범죄단속 기구로는 정치범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와¹⁴⁴⁾ 일반 형사범을 담당하는 ‘인민보안성’(경찰청)¹⁴⁵⁾이 있다. 인민보안성은 인민반, 규찰대(인민순찰대), 교방검열, 그루빠 등을 통해 범죄를 단속하고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인민반

인민반장은 주민들의 보고나¹⁴⁶⁾ 개별방문 등을 통해 반원의¹⁴⁷⁾ 생활지도와 사상동향 및 반내 외부 방문자 감시 등을 한 후, 보안서(경찰서)·보위부·당에 보고를 하는 한편, 인민반 조직생활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당·보위부·보안서·동사무

144) 국가안전보위부장은 이진수의 사망(1987.8) 이후 김영룡이 대행하다 1998년 3월 외화벌이 관련 수뢰혐의로 숙청된 후, 후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2008년 4월 14일 김일성 97회 생일(4.15)을 앞두고 최고사령관(김정일) 명령으로 금번에 국방위원장이 된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종합(수석)부부장도 우리나라의 소장에 해당하는 중장에서 상장으로 승진하였다(〈조선중앙방송〉, 2009년 4월 14일자).

145) 인민보안상은 200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상성 대장이 임명되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주상성(1933) 인민군대장은 4군단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08년 현재 최고인민회의의 12기 대의원(제383호선거구)으로 선출되었고, 이로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회의(2009. 4. 9,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9일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되었다.

146) 주민들은 저녁 퇴근 후 외출, 친척 등의 숙박 같은 일상적인 사항도 보고해야 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인민반장에게 세세히 보고해야 한다.

147)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인민반’ 조직을 통해 감시·통제하고 있다. 인민반은 가장 기초단위 조직으로 20-4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의 경우 70세대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동(洞) 밑에 반(班)에 해당하는 인민반을 책임진 ‘인민반장’이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성의 눈과 귀가 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제1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민반장은 유급일꾼으로 인민반 내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활동하며, 2007년 3월 ‘전국인민반장대회’를 계기로 위상과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소 등에서 요구하는 돈을 인민반에서 걷어 관계기관에 제공¹⁴⁸⁾하는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그리고 인민반에서는 행사동원, 강연회, 생활총화(월2회) 노력동원, 청소동원, 공공질서 유지, 사건사고 전과 등 각종 문제를 토론하고 자아비판도 한다.

평양시 인민반장에게는 2003년부터 담당지역 주민의 집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택수색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⁹⁾ 그리고 인민반장들을 중요행사 지원 불참자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안서와 보위부 등에 보고하고 불순자들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강제 추방시키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¹⁵⁰⁾ 2007년경부터 주민통제 수단으로 ‘1일 통보원’¹⁵¹⁾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인민반을 통해 체제유지를 위한 주민통제에 주목적이 있지만 부수적으로 일상생활을 통제함으로써 범죄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2) 순찰대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식량난 악화로 각종 사회범죄가 급증하자, 보안서(경찰서) 산하에 주민통제 보조기구로 ‘규찰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규찰대는 전국적으로 모든 리 및 1급 기업소 단위에 두고 있는데, 공장이나 기업소 근무자 중 특수부대 출신의 30대 제대군인(당원)을 10여명씩 선발하여 규찰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¹⁵²⁾ 규찰대원은 증명서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해당구역 내에서 2명씩 조를 이루어 비법적 장사행위 적발, 거동수상자 검문, 휴대물품 수색 등의

148) 현재 진행 중인 ‘평양시 새단장’ 자금의 상당부분도 인민반서 거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49) 평양시 인민반장은 지방보다 더 엄격하게 주민을 감시·통제하고 있다.

150) 탈북자들은 평양시 일반주민들도 지방에 비해 식량이 우선적으로 배급되는 등 출신성분이 좋은 선택된 자들만이 거주하기 때문에, 평양에서 추방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151) ‘1일 통보원’은 동리(洞·里)사무소 직원들이 담당하고 몇 개의 인민반을 맡아 매일 아침에 담당 인민반장을 방문하여 탈북 등으로 밤사이에 없어진 주민 및 세대가 있는지 여부와 외부에서 방문한 세대 및 인원이 있는지 여부 등 비정상적인 문제 발생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동리 사무소에 출근하여 국가안전보위부와 보안서 및 동당(洞黨) 비서 등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는 등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152) 이들은 원소속 직장에 매일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액 생활비 지급과 배급이나 노임자 등급 등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 동 조직의 관리는 시·군·보안서 감찰과 지도원이 담당한다.

임무를 수행하고 야간에는 해당 보안소에서 실탄이 5발씩 장전된 총을 지급받아 순찰을 실시한다. 순찰시 적발된 사람들은 보안서에 이관하고 보안서는 군(君)노동단련대로 이송하여 일정기간 처벌을 받도록 한다.¹⁵³⁾

3) 보안위원회

북한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의 재판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안위원회’를 리·군단위로 개최한다. 예를 들면 ‘리보안위원회’는 보안소장(위원장), 리세포비서, 보안소 리담당지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 후, 범죄혐의자를 군보안서로 이관할 것인지 아니면 리보안소 자체에서 처리할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군보안위원회’에서는 군당책임비서(위원장), 군보안서장,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보안서 감찰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해당 범죄자를 군재판소에 회부하여 재판을 받도록 할 것인지를 여부를 결정한다.

‘보안위원회’에서는 ‘특별분류’ 대상에 대해서는 면죄 및 감형의 혜택을 주고 있다. ‘1부류’는 비행사·대남사업담당자와 그 가족, 4촌 이내 친척이며, ‘2부류’는 김일성부자 가계연고자와 그 가족, 4촌 이내 친척이고, ‘3부류’는 중앙당인민위원회 위원, 보위부·보안성·당기관 간부와 그 가족, 4촌 이내의 친척이며, ‘4부류’는 북송교포와 그 가족, 4촌 이내 친척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특별분류 대상자 중 초범일 경우에는 ‘보안위원회’에서 대부분 면죄와 감형의 결정을 내려 혜택을 주지만, 재범일 경우에는 2·3·4부류는 법적인 처벌을 한다. 그러나 1부류

153)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63-64면; 최근에는 대학생 규찰대를 제조직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단속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동 조직은 ‘2006년 10월에 떨어진 장군님 방침 관철’이라면서, 옷에 초상휘장을 달지 않은 자, 머리를 짧게 자른 자, 귀걸이를 한 여성들을 자본주의 바람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단속하고 있다. 북한 당국에서는 옷차림이나 머리모양 등 용모에서부터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적 침투 현상이 시작된다고 보고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 나팔바지를 입거나 귀걸이를 하는 등 이른바 ‘튀는’ 행색을 하고 다니는 여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보위부에서 미행을 한다. 그 여성이 어떻게 그 옷을 입게 되었고 어떤 경로로 얻게 되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소상히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는 용모가 사회주의식이 아닌 사람들이 몇 %인지, 어떤 자본주의 바람이 들어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통계를 내어 지역별로 비교하거나 단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외화벌이 회사 일대 검거 선풍”,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1면).

대상자들은 반감을 가질 경우 국가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많다하여 재범일 경우에도 처벌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⁵⁴⁾

4) 교방검열

북한은 식량난 이후 강도와 절도, 청소년 비행, 성범죄, 공공시설물 파괴, 비법적 장사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고자 ‘교방검열’을 통해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교방검열이란 임의의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서로 상대 지역을 검열하는 방법이다. 북한은 1990년 중반 이후 불법·탈법 사례가 만연하자 인민보안성을 동원해 단속과 검열을 실시했다. 해당 인민보안서가 ‘비사회주의현상’을 적발하고자 자체 검열에 나섰지만 안면과 정실, 뇌물 등 ‘신중 지역주의’가 작용해 사건 자체가 축소되거나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인민보안성은 엄격하고 공정한 검열을 위해 이해관계가 작용할 소지가 없는 임의의 2개 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 인민보안서 요원 6-7명을 교차 투입함으로써 일정한 검열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인민보안성의 교방검열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장사꾼들로 주민들은 “배급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장사를 통해 목숨을 부지해 왔는데 장사마저 못하게 하면 굶어죽으라는 소리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교방검열은 1970년대 초 처음 등장하여 그동안 필요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실시하여 왔는데, 1990년 중반 이후 사회기강이 문란해지자 보안당국이 이 제도를 부활하여 단속을 강화한 것이다.¹⁵⁵⁾

5) 그루빠¹⁵⁶⁾

154) 위의 책, 64-66면.

155) 김광인, “내부단속 강화 ‘교방검열’ 실시”, <조선일보>, 2002년 4월 17일자.

156) 북한에서 사용하는 ‘그루빠’는 ‘어떤 사업을 위하여 묶어진 집단 또는 그 성원’을 의미하는데, 우리말의 ‘소조’에 해당된다(『조선말 대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367면.

가) 수사 그루빠¹⁵⁷⁾

북한은 살인, 은행습격, 중요 대상물 방화, 시·군 보안서의 주요 간부 테러, 수감 중 탈주 사건 등 주요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시·군 보안서는 ‘수사 그루빠(소조)’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수사 그루빠’ 요원은 감찰지도원, 수사지도원, 호안(護安)과¹⁵⁸⁾ 지도원(화재발생시)으로 구성한다. 즉, 각 부서에서 전문요원을 소집하여 통합·운용하는 합동수사본부라 할 수 있다. 최초 조직된 ‘수사 그루빠’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상급부서(도·직할시의 인민보안국)에서 다시 조직하는데, 새로 조직된 ‘수사 그루빠’는 최초 수사 요원 중 필수요원 1-2명만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도내 최정에 수사요원을 선발하여 구성하고 있다.

‘수사그루빠’는 비상설기구로서 사건발생 당시에만 시·군별로 구성하여 해당 시·군 보안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루빠에 동원될 경우에는 소속기관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수사 해결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군급 이상 보안서별로 ‘수사그루빠’를 조직 편성할 때마다 호수(號數)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시·군 보안서 관할내의 중요 사건 발생빈도를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호 ‘수사그루빠’는 세번째 ‘수사그루빠’를 조직했다는 의미이다.¹⁵⁹⁾

나) 한시적 그루빠¹⁶⁰⁾

북한은 공안기구 합동으로 ‘6·4그루빠’, ‘비사회주의 그루빠’, ‘유동 그루빠’ 등의 한시적인 주민통제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조직들은 뚜렷한 업무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사상일탈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첫째, 김정일의 지시(1992.6.4)에 따라 조직된 ‘반범죄그루빠(일명 6.4그루빠)’는 무직업자, 직장무단이탈자, 군무탈영자, 마약, 도박, 밀수, 매춘, 미신, 패싸움 등을 없애고 사회주의 기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검거활동을 수행한다. 동 그루빠

157) 김용기, 『북한실상종합』 (서울: 내외통신사, 1996), 133면.

158) 호안과는 교통·화약폭발기계 등 안전과 관련되는 업무 처리, 교통초소 운영감독, 운전면허 심사, 차량번호 부여, 소방업무 등을 담당한다.

159) 김용기, 『북한실상종합』, 133면.

160) 위의 책, 135-137면 참조 재정리.

는 비상설 조직으로 15-25명으로 편성한 후, 각 도시·군에서 범죄자들을 타격하고 혁명적 질서를 세운다는 명분하에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을 단속·통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특히 1994년 6월 중순경 평안북도 양덕군에서 무죄를 항변하던 주민을 폭행하여 사망하는 사건으로 동 그루빠는 해산되었다. 그러나 최근 6·4그루빠가 다시 조직되어 국경연선에서 활동을 재개(2004.7.10)하고 있다.¹⁶¹⁾

둘째, 북한당국은 외화벌이 사업체 및 일반주민의 불법 상행위가 급증하게 되자, 경제사범을 집중 단속하고자 ‘유동(流動)그루빠(일명 이동단속반)’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 보안서 단위까지 보안원과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졸업예정자 2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유동그루빠를 운영하고 있다. 동 조직원들은 필요시 담당구역에 관계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셋째, 북한은 소련과 동구권 붕괴이후 자유사조 유입에 따른 주민들 간에 새로운 유형의 사회일탈 현상이 빈발하게 되자, 김정일은 1992년 초 ‘비사회주의 반대투쟁운동’을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 주관하에 보위부, 검찰 등과 합동으로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전국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지방도시의 경우 비사회주의 그루빠의 총책임자는 도당책임비서, 행정책임자는 도 안전국장(현 보안국), 정치책임자는 도당행정부장, 집행요원은 도 안전국 감찰처장과 도검찰소 검사로 구성되며 통상 10명이 1개조로 구성되어 자신의 출신지역이 아닌 타 지역을 상호 교차하여 검열하고 있다. 검열 대상인 ‘비사회주의’ 행위에는 도박, 사기, 매춘 등의 일반범죄와 고리대금 등 불법 영리활동을 비롯하여 관상, 사주, 궁합 등의 미신행위나 서구식의 복장과 머리모양, 한국가요 선호 등의 풍속범죄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간부들의 뇌물수수, 월권행위, 인사청탁 등의 비리와 주민들의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에 대

161) “7월의 비사그루빠 활동”, 오늘의 북한소식 제1호,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2006년 9월 16일자, 36면.

한 검열도 강화하고 있다.

넷째, 인민보안성이 마약 금지 포고령(2006.3.1)을 내린 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가운데, 2007년 10월 13일부터 마약 현행법을 체포하기 위해 마약 그루빠를 조직해 운용하고 있다. 마약 현행법 수사 그루빠는 얼음(히로뽕), 아편 등을 비롯한 각종 마약 거래를 없애고자 전국 각 보안서와 검찰소에서 활동하고 있다.¹⁶²⁾

6) 기타 주민통제 조직

북한당국은 증가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주민통제가 목적인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소년단 등 각종 사회단체 등을 통한 사상교양 등 집단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주민들의 각종 사회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최근 김일성 부자 초상화·동상 등 우상물에 대한 훼손 및 파괴사건이 확산되자, 김정일은 ‘적대분자 책동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위부에 반체제사건 즉결처분권이 부여되어 집중단속하게 되고, 기존 주민감시체제를 보강한 ‘3인방통제’를 통해 간부들에 대한 비리사찰과 주민들에 대한 동향을 감시하는 등 주민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3인방통제란 주민 3명 중 1명을 감시원으로 임명하여 주민동향을 감시·보고하는 체제를 의미하며, 1998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행정관료의 비위적발을 위한 국가검열성과 주민의 사상지도를 담당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을 통해 각종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통제하고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해당 당책임비서, 인민위원회위원장, 인민보안서장 등 지도간부 5-6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권한과 임무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및 경제사범에 대한 징계와 처벌방침 결정, 각종 규정 및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상의 분규 및 오류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다.

162) “마약 거래 단속 강화”, 오늘의 북한소식 제57호,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2007년 3월 16일자, 1면.

국가검열성은 내각 산하부서로 국가행정기구의 사상, 업무의 검열사업을 수행하며, 행정관료들의 반국가적, 반혁명적 행위를 적발하거나 위법행위를 적발한다. 국가검열성은 1972년 헌법 개정으로 중앙인민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가검열위원회로 되었으나, 1998년 헌법 개정으로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다시 국가검열성으로 환원되었다.

2. 보안기관의 주민통제 사업¹⁶³⁾

인민보안성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정권보위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을 통제하는 업무이다. 북한 주민동향에 대한 내부분서에 의하면 인민보안성을 포함하는 공안기관들의 주민들 동향 제의서는 보고문건, 모사보고문건 등의 형식으로 김정일에게 보고하여 왔다.¹⁶⁴⁾ 인민보안성은 주민통제를 위해서 정치사업, 주민요해 사업, 주민성분조사사업, 교화사업 등의 특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 정치사상 사업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를 정당화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당의 엄격한 통제 하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치사상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보안원 역시 사회주의 경찰의 특징인 정치사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주의권에서 말하는 정치사업이란 공산혁명의 목적과 의의, 그 수행방법과 전망 등을 당원과 군중들에게 인식시켜 이른바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동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북한은 정치사업을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무장시켜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 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이라고 규정하여 ‘당의 최우선사업’으로 설정하

163)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53-65면 재정리.

164) <조선일보>, 2003년 2월 17일자.

고 있다. 즉, 정치사업이란 주민들을 수령(김정일)과 당의 노선에 복종하고 순응토록 하는 의식화 사업이다.¹⁶⁵⁾

인민보안성 내 정치국은 독립부서로 정치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정치사업은 인민보안국과 인민보안서의 정치부에서 담당한다. 김정일은 북한 경찰의 정치사상교육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민보안성 정치국의 역할에 달려 있다면서 정치국 임무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사회안전일군들에 대한 교양사업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사회안전성 정치국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사회안전일군들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은 도당위원회와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지방당조직들이 하지 않고 사회안전성 정치국에서 통일적으로 맡아하고있는것 만큼 사회안전성 정치국의 임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안전성 정치국은 자기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교양사업에 대한 지도를 잘하여야 합니다. 정치국 책임일군들은 사회안전일군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선전선동부나 아래일군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치국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정치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장악하고 대책을 세우며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치하는 방법으로 정치교양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¹⁶⁶⁾

인민보안성은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언제나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¹⁶⁷⁾으로 규정하면서, “사회안전일군(인민보안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¹⁶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 경찰의 ‘정치사상사업의 기본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과 수령을 정치적으로 옹호보위¹⁶⁹⁾”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결국, 북한의 정치사상사업은 당 정책의 선전·선동과 유일사상체계 확립, 수령

165)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53-65면; 김윤영,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165-172면 재정리.

166) 김정일, “사회안전일군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사회 안전성 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3월 29일”(『김정일선집(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74면.

167) 위의 책, 61면.

168) 위의 책, 63면.

169) 위의 책, 63면.

결사옹호·보위, 조선혁명(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전통과 공산주의 교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인민보안성 산하 단위별로 매주 월요일 생활총화, 화요일 정치학습, 수요일 강연 및 학습, 목요일 강연회, 토요일 생활총화 등이 운영되고 있다.¹⁷⁰⁾

나. 주민요해사업

인민보안성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주민요해사업(住民了解事業)¹⁷¹⁾을 담당하는 일이다. 주민요해사업이란 17세 이상 모든 ‘공민’의 계급적 토대, 출생, 학력, 정당, 종교, 상벌관계 등 사회정치활동 경위, 가족친척관계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통상 주민등록사업이라 한다.

주민요해사업은 인민보안성 주민등록국에서 지도·감독하며, 직할시·도의 경우 해당 인민보안국 주민등록처, 시(구역)·군 인민보안서의 경우 주민등록과에서 담당한다. 인민보안서의 경우 주민등록과는 과장(소좌-대위), 지도원(대위-중위) 3-4명, 주민등록원 5-8명(보안원이 아니라 상주 또는 파견노동자임)으로 편성되어 있다.

주민요해사업은 크게 주민등록과 공민등록 관리업무를 구분되는데, 주민등록 담당자는 주민성분 분류조사, 공민증 대상 주민등록문건관리 유지, 주민 거주지 변동사항 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공민등록 담당자는 공민증 발급, 주민 거주지 변동사항 파악 후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이관하고, 출생과 사망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한다.

다. 주민성분 조사사업

170) 김학범, “통일후 경찰통합을 위한 남북한 경찰조직기구와 기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년, 103면.

171) 주민요해사업이란 북한주민의 계급적 토대, 출생, 학력, 사회활동 사항, 친인척 관계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즉, 북한주민의 성분을 분류하여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한 사업이다.

북한은 1956년 8월중과사건 이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성분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주민성분 조사 사업은 전주민들의 사상성향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1958년 전체 주민에 대한 성분을 조사하고, 출신성분에 따라 주민을 분류하는 계급정책을 공식적으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1958년부터 1960년 말까지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64년 4월부터 1967년 3월까지 ‘주민 재등록사업’, 그리고 1967년 4월부터 1970년 6월 사이에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식 계층 구조의 골간을 완성하였다. 그 이후에도 ‘주민요해사업’, ‘주민증 검열 사업’,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주민증 갱신사업’ 등을 필요시마다 꾸준히 실시하였다.¹⁷²⁾ 북한에서 실시된 출신성분 구분 작업과 그 내용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4-3과 같다.

표 4-3 주민성분 조사사업¹⁷³⁾

구 분	시 기	내 용
중앙당집중 지도사업	1958.12-1960.12	불순분자 색출 차단 및 산간벽지 강제이주
주민재등록사업	1966.4-1967.3	100만 노동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분 분류(직계3대 처가 외가 6촌까지 내사)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	1967.4-1970.6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재분류
주민요해사업	1972.2-1974	남북대화 관련, 주민동태 조사 파악, 전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공민증 검열사업	1980.1-1980.12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 갱신으로 불순분자 색출과 통제기능 강화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1980.4-1980.10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 자료를 체계화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1981.1-1981.4	북송교포들에 대한 동향감시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감시 자료를 과학화
공민증 갱신사업	1983.11-1984.3	공민증 갱신 및 주민문건 정비
주민재등록 사업	1989.10-1990.12	주민등록부 재조사 정리, 이산가족 개인 신상카드 작성
공민증 갱신작업	1998.2-1998.10	수첩형태에서 양면 비닐코팅 카드형으로 교체(주체연호 사용, 혈액 게재)

172)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북한이해 2000』(서울: 통일교육원, 2000), 344-345면.

173) 통일부, 『2000북한개요』, 1999, 420면 재정리.

북한주민들은 대개 자신들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권리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만이 주민들의 소속 부류를 알고 있으며, 인민보안성은 주민들의 부류를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¹⁷⁴⁾

북한은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이라는 3계층 51개 부류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4-4 3계층 51개 부류 분류표

3계층	비율	51개 부류	대 우
핵심계층	28%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 애국열사 유가족, 8·15이후 양성된 인텔리, 전사자 가족, 후방가족, 영예군인 등	-당정군 간부로 등용 -타 계층과 분리 특혜조치(진학, 승진, 배급, 거주, 진료)
동요계층	45%	중·소상인, 수공업인, 소공장주, 하층접객업자, 중산층 접객업자, 월남자 가족(1), 중농, 민족자본가, 월남자가족(2·3부류), 중국귀환인, 일본귀환인, 8·15이전 양성된 인텔리, 안일 부화방탕한 자, 접대부 및 미신송배자, 유학자 및 지방유지, 경제사범 등	-각종 하급간부 및 기술자로 진출 -총성심에 따라 극소수를 핵심계층으로 승격
적대계층	27%	8·15이후 전락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주의자, 반동 관료배, 천도교 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당자, 철직자, 적 기관 복무자, 체포 투옥자 가족, 간첩관계자,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당원, 자본가, 월남자 가족(제1부류) 등	-유해 중노동에 종사 -입학 진학 입당 봉쇄 및 탄압 -제재·감시·포섭 대상으로 분류 ·제재 : 강제이주 격리수용 ·감시 : 향시 동태감시 ·포섭 : 집중적 교양 -극소수 동요계층으로 재분류(자녀)

* 자료: 통일부, 『2000북한개요』, 1999, 420면;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0, 346면.

* 북한의 1970년 당시 주민등록재사업 결과를 토대로 분류한 것임.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공산권의 붕괴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주민들의 탈북현상이 증가되자 주민들의 동요방지, 체제불안 극복, 원활한 경제생산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의 마음을 회유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실은 김일성방송대학 강

174) 위의 책, 348면.

좌프로그인 “김일성 혁명력사” 시간(1994.11.5)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여기서 북한은 3계층을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등으로 새롭게 명명하고 3계층에 어떠한 주민들이 속하는지를 열거하면서 특히 ‘순결한 사람만을 가지고 혁명할 수는 없고, 조국통일투쟁의 승패는 많은 군중을 쟁취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이유로 ‘복잡한 군중’을 포섭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1984년 갱신하여 사용해온 ‘공민증’을 1988년 2월 이후 양면으로 된 새로운 공민증으로 교체하였다. 기존 공민증은 17세 이상 전주민이 필수적으로 상시 휴대해야 하는 기본 신분증명서(수첩형 12면)로 인적사항, 직업, 거주, 퇴거, 결혼 및 가족관계와 전과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공민증 없이는 외출과 여행이 불가능하며 분실·미소지시 벌금부과 등의 제재를 당한다. 1998년 갱신한 공민증은 종전의 수첩모양에서 양면형으로 축소되었고, 직업, 가족관계, 거주, 퇴거를 삭제한 대신 주체연호와 혈액형란이 새로 추가되었다. 공민증 갱신은 사회분위기 쇄신의 하나이자 식량난 등으로 장기간 거주지를 무단이탈하는 자가 급증하고, 공민증 위조와 변조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정확한 인구실태 파악과 효율적인 주민통제 및 위조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휴대의 편리와 발급의 간소화로 신분검열시 신속한 파악이 가능케하는 동시에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¹⁷⁵⁾

북한당국은 1990년대부터 주민들을 기본군중, 복잡군중, 적대계급 잔여분자 등으로 표 4-5에서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4-5 북한의 신주민 성분분류

계층	부류	평가
기본군중	혁명가혁명가 가족혁명유가족, 영예군인영예전사자, 접견자, 영웅공로자, 제대군인, 전사자가족피살자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 가족	기본계급출신으로 혁명의 매단계마다 수령님과 지도자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왔으며 앞으로도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에 따라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는 계층

175)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기구 고찰』, 59면.

복잡군중	인민군대 입대 기피자인민군대 대열도주자, 귀환군 인·귀환시민, 반동단체 가담자일제복무기관 복무자, 10자대, 금강학원 관계자, 정치범 교화출소자, 종교인, 월남자 가족, 체포된 자 가족, 포로 후 돌아오지 않는 자 가족, 해외도주자 가족, 지주가족,부농가족, 농촌10장 가족, 예속자본가로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착취한 자, 친일 친미 악질 종교인 가족, 종파분자 가족, 종파연류자 가족, 간첩가족	계급적 토대, 사회정치생활 경위, 가정 주위 환경에서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계층
적대계급 잔여분자	지주, 부농농촌 10장, 예속자본가, 친일파, 친미파, 악질종교인, 종파분자, 종파연류자, 간첩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과 일제·미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반역자

* 자료: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58면.

라. 교화사업¹⁷⁶⁾

북한 경찰(보안서)은 일반 형사범과 ‘비사회주의자’를 구속한 후 시·군 인민보안서 내 구류장에 수용하여 수사를 하게 된다. 정치범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별도로 수사를 한다. 피의자의 범죄사실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수용시설로는 예심기관의 시·군·구역 인민보안서 대기실과 구류장이 있다. 그리고 인민보안성(경찰청) 교화국은 범죄자를 수용하여 교정하는 교화소를 비롯하여 노동단련대와 집결소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1) 피의자 수용시설

첫째, 인민보안서는 대기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기실은 미해명자(피의자)를 체포하여 이들을 조사하면서 대기시키는 장소이다.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정도이다(형사소송법 제 144 조).

둘째, 인민보안서 수사과에서는 구류장을 운영하고 있다. 구류장은 심문 중인 피소자와 확정판결을 받은 피의자를 교화소에 보내기 전에 임시 수용하는 시설

176) 김윤영,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에 관한 연구』, 84-85면.

이다. 구류장은 형사소송법¹⁷⁷⁾ 제143조¹⁷⁸⁾에 의한 현행범 및 준현행범 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¹⁷⁹⁾에 의한 구속 처분자와 1차적으로 수사한 현행범 또는 범죄 피해명자 등을 길게는 90일까지 수용(예심기간 중에도 구류장에서 생활)하게 된다.¹⁸⁰⁾

2) 범죄자 구금시설

인민보안성 교화국에서는 교화사업을 직접 관할하며, 북한전역에 범죄자 구금시설로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4-6 범죄유형별 구금시설¹⁸¹⁾

범죄유형	교 화 소		기타구금시설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반국가반민족 범죄 (14개)	국가전복음모죄 등(5개)	국가전복음모죄 등 (14개)	
국방관리질서침해범죄 (16개)		전시생산준비불이행죄 등(15개)	전시생산준비불이행죄 등(10개)
사회주의경제침해범죄	국가재산약취죄	국가재산절도죄	국가재산절도죄

17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은 1992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2호로 채택되어 2004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6호로 수정 보충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 841면부터 참조할 것)

178) 북한 형소법 “제 143 조(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 사유)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자가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되었을 경우 2.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3.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4.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뒤쫓기우고 있을 경우 5. 범죄혐의자,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

179) 북한 형사소송법 제 184 조(구속처분의 종류)는 ‘구류구속처분’, ‘자택구속처분’, ‘지역구속처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180) 북한 형사소송법 제187조(구류의 기간)는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어서, 제 188조(구류기간의 연장)에서는 “이 법 제151조 1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시(구역), 군예심원과 도(직할시) 예심원은 도(직할시)검찰소장, 중앙예심원은 중앙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늘일 수 있다”라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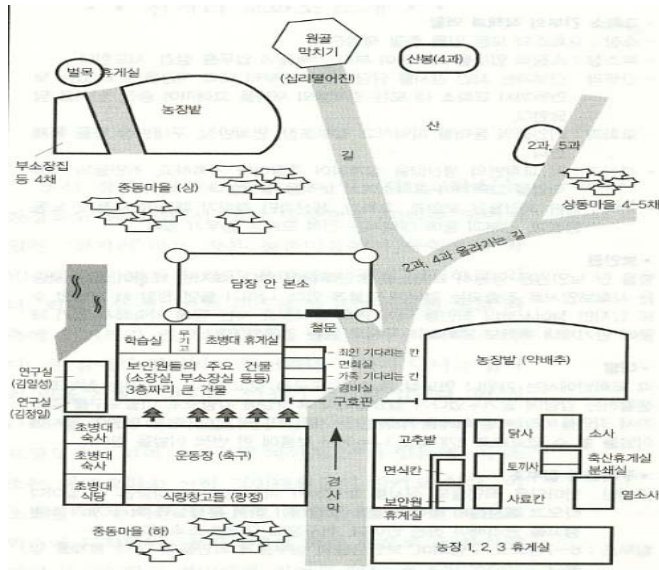
181) 하기수, 『북한의 범죄인처우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교육원, 2006.12), 386면 참조.

(104개)	국가재산강도죄 등 (6개)	국가재산횡령죄 등(83개)	국가재산횡령죄 등 (76개)
사회주의문화침해범죄 (26개)	역사유물 밀수밀매죄 마약 밀수 등(3개)	퇴폐적 문화 반입유포죄 등(25개)	퇴폐적 문화 반입유포죄 등(16개)
일반행정관리질서침해범죄 (39개)		소요죄 직무집행방해죄 등 (30개)	직무집행방해죄 허위날조유포죄 등 (29개)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침해범죄 (20개)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등(15개)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등(18개)
공민의 생명·재산침해범죄 (26개)	고의적 중살인죄 유괴죄 등(3개)	고의적 중살인죄 등 (25개)	

가) 교화소

교화소는 주로 재판을 통해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자가 수감되어 강제노동과 교양을 통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화(敎化)하는 교정시설로 대개 도 단위

그림 4 함북 회령 전거리 교화소(제12교화소)¹⁸²⁾



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¹⁸³⁾ 노동교화소에 수용된 자들은 주로 농장, 건설, 봉제, 신발, 가죽가방 제작 등의 노동을 해야 한다. 일부 교화소에서는 석탄 채굴이나 금광 채굴 등을 한다. 교화소 주변에 농장이나 채소밭 등이 산재되어 있다(그림 4 참조).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을 하고, 저녁식사 후 1시간 반 동안 단위별로 생활총화를 한

182) 리준하, 『교화소 이야기』 (서울: 시대정신, 2008.5), 49면.
 183)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함경남도 함흥의 사포구역에 여자교화소, 화산구역에 남자교화소가 있고, 그외 개천교화소, 전거리교화소, 수성교화소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이 시간에는 주로 김일성, 김정일 교시를 읽고 외우거나, 노동신문 기사를 읽고, 수용자의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하게 된다.¹⁸⁴⁾ 이와 같이 교화소는 강제 노동과 함께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이나 교시를 암송하거나 자아비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1995년 방북한 국제사면위원회(AI)에 북한당국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¹⁸⁵⁾, 북한에는 사리원교화소, 형제산교화소 등 3개의 교화소가 있으며, 1개소에 약 800명 내지 1,000명의 형 확정자들이 수용되어 있고, 반국가사범(정치범) 약 240명이 형제산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⁶⁾

북한당국은 교화소 수감자중 모범생활자, 심신이 아주 허약한 자 등 소수인원을 김정일(4.15)과 김정일(2.16) 생일, 당창건일, 공화국창건일 등을 기하여 가석방하기도 한다. 각 구역 인민보안서에서는 가석방자들을 형기가 만료될 때까지 엄격히 통제·관리하고 있다. 가석방자는 형기가 만료되는 시기까지 공민권이 박탈된 상태로 거주지에서 4km이상 이동시에는 보안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담당 보안원이 수시로 집을 방문하여 생활 실태를 파악하며 인민반장과 주민을 통해 감시한다. 또 월 2회 가석방자가 보안소에 가서 문서나 구두로 직접 생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보고란 가석방된 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일일생활 결과(24시간 활동내용, 자아비판 내용)를 문서에 기록하여 보고하는 것으로서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동향 내용까지 포함한다.¹⁸⁷⁾

184)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수용자의 작업 형태에 따라 교양학습을 매일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혹은 일요일 저녁식사 전에 교양학습과 자아비판을 하기도 한다.

185) 국제인권기구에서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정기보고서 심의과정에서 북한 구금시설의 현장 방문은 요청하였으나, 북한 당국에서는 적대세력들이 인권문제를 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반대하는 불순한 의도로 악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당 구금기관에서 이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현장방문이 곤란하다고 불허하였다.

186) 북한의 이창하 조선인권연구협회 서기장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정치범수용소나 교화소 등에 대해 증언한 것은 모두 거짓이며, 교화소는 전국에 3개 밖에 없고 전체 수용자 수는 800명 내지 1,000명에 불과하며, 정치범은 240명이 있는데 형제산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187) 김용기,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162-163면.

나) 노동단련대

노동단련대는 죄가 가벼운 폭력사범과 절도자, 기업소 무단결근자, 생활총화 불참자 등을 15일에서 6개월간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무보수로 강제노동을 시키는 곳이다. 노동단련대에 수용될 경우 노동교화형과는 달리 공민으로서의 기본권은 보장된다. 북한주민들은 노동단련대를 ‘꼬빠크’, ‘꽃마크’, ‘깡판’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즉, 노동단련대는¹⁸⁸⁾ 1990년 중반 이후 북한 전역에 새로 생긴 시설로 감옥과 수용소의 중간형태를 말한다. 이곳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거주지 시·군 소속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는 특징이 있다. 이 시설은 식량배급이 중단되면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북한 곳곳에서 도적떼가 들끓자, 이를 단속하기 위해 지역별로 임시적으로 만든 수감시설이라 할 수 있다.¹⁸⁹⁾

노동단련대 관리는 해당지역 보안서 감찰과에서 감독하고 있으며, 관리원들은 주로 전직 보안원을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다. 수용능력은 100명 내지 2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수용자들 대부분은 단순 월경자, 사기, 매춘, 국가몰자 횡령, 마약중독자, 점치는 행위(사주, 관상, 손금 등), 무단결근, 한국 CD나 테이프 불법시청 등 사회일탈자들로 강제노동을 하며 사상교양을 받는다. 최근 탈북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법적으로 형벌을 주기에는 경미한 단순 탈북자들도 노동단련대로 보내지고 있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노동단련대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¹⁹⁰⁾

노동단련대의 일과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새벽 작업을 한 후 7시 식사, 오전

188) 2004년 개정된 형법 31조에는 노동단련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는 각 시·군에 있는 노동단련대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다. 형법 제31조는 ‘노동단련형 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며, 노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 그리고 범죄가 더 늘어날 경우에도 2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5일~6개월간 수용되는 노동단련대 수용 대상자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상 ‘노동단련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경우는 ‘노동단련대’가 아니라 ‘교양소’에 수감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북한 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연구팀, “북한의 일권실체 4, 노동단련대”, 『자유공론』 2009년 2월호, 서울: 한국자유총연맹, 122면).

189) 강철환, “억류 여기자 수감 북한 교화소는 어떤 곳”, <주간조선 2061호>, 2009.6.29.

190) 김안식, “북한의 구금시설 및 행형제도에 관한 고찰”(『교정담론』 제3권1호, 수원: 아시아교정포럼, 2009.6), 112면.

8시~저녁 8시까지 본 작업을 하게 된다. 저녁에는 사상교양과 인원점검 후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동단련대에서는 집짓기, 농사일, 주변 탄광에서 석탄 캐기 등을 한다. 작업장을 오갈 때는 자신이 살던 지역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삽과 곡괭이를 들고 줄지어 다니면서 “비(非)사회주의를 뿌리뽑자”라는 내용의 구호나 자신이 지은 죄를 외치게 하여 수치심을 유발시킨다. 노동단련대에서 탈주하면 교화소로 보내진다. 처음에는 노동단련대의 수감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기록에 남게 된다. 하지만 교화소와는 달리 당증과 공민증이 유지된다.¹⁹¹⁾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탈북자들과의 인터뷰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들 중 34명(34%)이 노동단련대 이상의 구금시설에 구금된 적이 있었고, 그 중 4명만이 재판절차를 거쳤고, 나머지 30명(88.2%)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금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 귀하께서 노동단련대 이상의 구금시설에 구금된 적이 있습니까?¹⁹²⁾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34	34.0	100.0
무응답	66	66.0	
합계	100	100.0	

표 4-7 귀하께서 체포되어 결과적으로 노동단련대 이상을 벌을 받았다면, 재판절차를 거쳤습니까?¹⁹³⁾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재판을 받았음	4	11.8	11.8
재판을 받지 않았음	30	88.2	88.2
합계	34	100.0	100.0

191) 북한 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연구팀, “북한의 일권실체 4, 노동단련대”, 123면.

192)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191면.

193) 위의 책, 191면.

다) 집결소

집결소는 여행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불량아, 탈북자, 사건계류자 등 교화소로 보내기에는 죄질이 경미하고 노동단련대로 보내기에는 죄질이 무거울 경우에 보내지는 수용시설이다. 이들은 집결소에 6개월에서 1년 동안 공민권을 박탈하지 않은 채 수용되며 채석장, 농장 등의 작업장에 동원된다. 집결소는 각 직할시·도의 보안국 감찰처에서 관할한다. 즉, 집결소는 체포된 경미범죄자를 수용하여 조사하는 대기실이라 할 수 있으나, 수용자들을 노동에 동원하는 등 교화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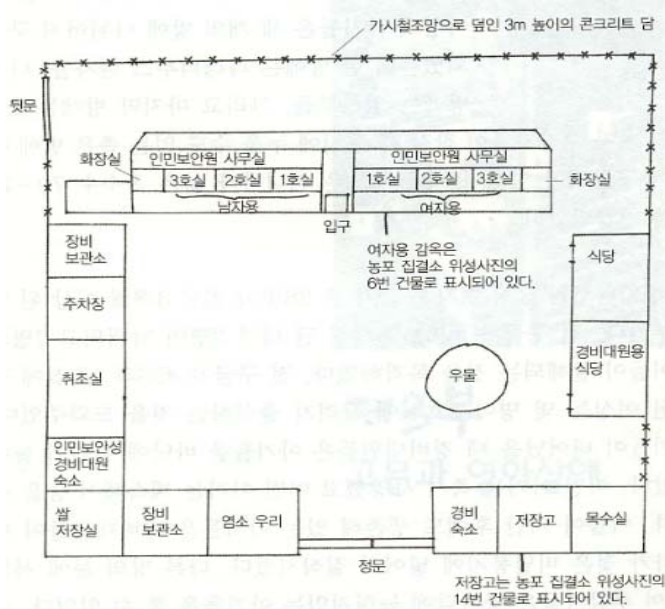
청진의 도집결소의 경우에는 국경을 넘었다가 잡혀 들어온 비법월경자(도강자)들만 수용하고 있는데 많을 때에는 약 1,500명에 달한다. 도집결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은 출신지역의 담당 주재원이 와서 데리고 가야 하는데 주재원이 계속 오질 않아 오랫동안 대기 상태로 수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집결소는 형법에 규정된 공식적 구금시설이 아니라는 데에 인권침해의 근본적 요소가 내재하고 있다. 노동단련대는 2004년 형법개정 이후 판사의 선고가 가능해지는데 반해 집결소는 여전히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다. 즉, 집결소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결 심판에 의해 처리된 사람들이 수감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횡포와 고문이 일반 교화소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 또 직장에서 무단결근, 총화학습 불참 등 도덕적 해이의 경우에도 집결소로 보내며, 의사나 운전기사 등의 업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범죄발생의 경우에도 집결소로 보낸다.¹⁹⁴⁾

주요 집결소는 기차나 도로를 통해 주요 지역으로 들어가는 교차점에 설치돼 있다. 가장 유명한 곳은 평양역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있는 간리역에 설치된 ‘간리 집결소’이다. 이 역은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에서 평양으로 내려올 경우 거쳐야 하는 역으로, 여행증이 없이 평양으로 오다 이 역에서 체포된 자들은 간리

194) 김안식, “북한의 구금시설 및 행형제도에 관한 고찰”, 113-114면.

195) 데이빗 호크, 『감춰진 수용소』, 165면.

그림 5 농포집결소¹⁹⁵⁾



집결소에 임시 수감돼 3개월간 강제노역을 하게 된다. 함경북도 농포리에 위치한 ‘농포 집결소’는 단순 탈북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해 3개월간 강제노역을 시키는 악명 높은 집결소이다. 이곳에 수감되었던 한 탈북자는 “구타와 강제노역으로 3개월간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며 “3년 교화형을 받은 사람보다 건

강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¹⁹⁶⁾

196) 강철환, “억류 여기자 수감 북한 교화소는 어떤 곳”, 2009.6.29.

V. 결론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그들 체제를 ‘계급으로부터 해방’된 범죄 없는 지상 낙원의 사회주의 사회로 선전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에 근무했던 외교관, 탈북자나 망북자의 증언, 북한 내부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식량난이 극심했던 1990년대부터는 반체제사건, 쿠데타, 반김일성·김정일 전단 및 구호 사건 등의 정치범죄와 함께 절도범죄, 청소년범죄, 성범죄, 위조화폐 범죄, 자본주의 문화 반입 및 유포 범죄, 마약범죄, 권력형범죄, 병역비리 등의 일반범죄가 빈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북한은 이러한 범죄발생 원인을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려 책임을 전가시키는 한편,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형법 강화, 포고령 선포, 김정일 교시를 하달하고 순찰대, 보안위원회, 교방검열, 그루빠 등 범죄단속 기구를 가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주민통제 조직과 주민통제 사업을 강화하는 등의 각종 범죄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북한이 각종 범죄와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경제난과 주민들의 불만 등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한 범죄대책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가 급증하여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사회이탈의 주된 원인인 체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극단적인 폐쇄정책을 지속하는 한 실업율의 증가, 사회통제 약화,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 등에 따른 다양한 범죄를 확대 재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고 주민과 함께 공존·공생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범죄와 대책에 관련된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자료를 확보할 없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통계자료를 통한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언론 보도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남북한 교류나 남북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의 범죄 실태와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범죄와 관련한 연구자의 개별적인 자료 획득은 태생적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정부당국은 전직 북한경찰 출신이나 관련기관에 근무했던 탈북자들과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 특히, 통일에 대비하여 범죄전문가나 경찰관의 남북교류를 추진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진일보적인 대응을 통한 연구만이 통일 전후 예상되는 치안환경과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통일 전후 사회 안정화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독의 통일에서 보았듯이 남북통일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시일 내에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1. 북한 문헌

- 김근식, 『형법학 (1)』,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6.
- _____, 『형법학 2』,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
- _____, “도, 시, 군 당위원회들앞에 나서는 과업”(도당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1년 4월 3일.
- _____,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2년 11월 21일.
- _____, “사회안전일군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사회 안전성 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3월 29일.
- _____, 『김정일선집(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_____, 『김정일선집(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김정일선집(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김정일 선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증보판』 2004.7-2005.12, 법률출판사, 200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단속법”, 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0호로 수정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2호로 수정보충.

조선외무성 대변인, “우리는 위조화폐의 피해자로 되고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2006.2.28.

<조선중앙방송>, 2009년 4월 14일자.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9일자.

“전국분주소장회의 및 국가표창수여식 진행”, <로동신문>, 1999.10.2.

최길상, “우리 식대로 창작하는것은 주체문학의 위력을 강화하는 근본담보”, 『조선문학』 1998.1호,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판결판정집행법”,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학습제강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행정법적제재규정”,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 제4252호, 1995.3.30.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6.

2. 국내문헌

1) 단행본

권영경 외, 『북한이해 2000』,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0.

기광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조용관·김병로, 『북한 한걸음 다가서기』, 예수전도단, 2007.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용기, 『북한실상종합』, 서울: 내외통신사, 1996.

김윤영, 『김정일 체제의 위기와 위기관리』,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2005.

_____,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에 관한 연구』,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2006.

- _____,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2006.
- 김윤영·조용관,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도서출판 한울, 2009.7.
- 김현 외, 『2006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06.
- 내외통신사,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서울: 내외통신사, 1996.
- 내외통신사, 『북한용어 400선집』, 서울: 내외통신사, 1998.
- 데이빗 호크/이재광 역, 『감춰진 수용소』, 서울: 시대정신, 2003.
- 리준하, 『교회소 이야기』, 시대정신, 2008.5.
- 법무부,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 서울: 법무부, 2005.
- _____,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Ⅱ)』, 서울: 법무부, 1993.
- 법무부 법무실, 『북한법연구(VII)』, 법무자료 제128집, 서울: 법무부, 1990.
-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서울: 법제처 1991.
-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 개관』, 서울: 법원행정처, 1996.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94.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 1995.
- _____, 『북한인권백서 2003』,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이교덕, 『김정일선집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4』,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사회 통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이재원 외, 『2008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 2008.
-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정열철 외,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서울: KBS 한국방송 남북교류협력팀, 2005.
- 통일부 정보분석국, 『2000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1999.
- _____, 『2004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2003.
- _____, 『2005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2005.
-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2000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0.
- _____, 『2001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1.
- _____, 『2002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 _____, 『2005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5.

- _____, 『2006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 _____, 『2007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 한상완, 『학술정보 교류 방안: 북한의 학술정보 유통현황 및 교류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1.9.25.

2) 논문

- 고성호, “북한주민의 범죄와 이탈”,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서울: 한국방송공사 남북교류협력팀, 2005.12.
- 김병로, “북한으로부터의 대량난민문제에 대한 대책”, 『한일저널』 제31권, 1997.6.
- 김승수, “통일후 북한지역의 범죄와 사회전망”, 『청람 17호』, 용인: 경찰대학, 2001.
- 김안식, “북한의 구금시설 및 행형제도에 관한 고찰”, 『교정담론』 제3권1호, 아시아교정포럼, 2009.6.
- 김윤영, “북한소설의 갈등양상 연구”, 수원대 박사논문, 2003.
- _____,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제7권 제3호, 경찰대학, 2007.
- 김종일, “범죄의 늪에 빠진 북한정권: 북한정권은 범죄행위 중단으로 국제적인 오명을 씻어야 한다”, 『북한』 2006년 3월호, 서울: 북한연구소, 2006.
- 류길재, “김일성·김정일 문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 문정민, “북한형법상의 인신침해죄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조선대, 1987.
- 박원홍, “북한주민의 이탈현상과 부조리 실태 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2002.
- 손희두, “북한 재정법제의 변화와 과제”(국민대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국민대 법학연구소, 2007.
- 심지연, “북한연구에 대한 역사적 접근”, 『북한연구방법론』, 도서출판 한울, 2003.
- 유동열, “북한의 경찰체제분석”, 『공안논총』 제13집, 용인: 공안문제연구소, 2001.
- _____, “남북통일대비 경찰통합방안”, 『민주사회연구』 제17권 제3호, 용인: 공안문제연구소, 2005.
- 윤옥경, “미국의 교정사고 현황과 대책”(한국교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교정학회, 2008. 【
- 이종호, “통일후 북한지역에 있어서의 불법 과거사 청산에 관한연구”, 아주대 석사논문, 2001.
-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동향과 전망”, 『2005년도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서울: 법제처,

2005.

정원경, “북한은 국제범죄 종합 백화점”, 『주간동아』 546호, 서울: 동아일보사, 2006.8.1.

최인섭, “북한의 일반범죄에 관한 예비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9』,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1992.

3) 기타

강재혁 기자(함흥출신, 2004년 입국), “평양 反체제조직 ‘우리들의 투쟁’ 최후”(테일리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300&num=35768>), 2007.1.17.

강철환, “역류 여기자 수감 북한 교화소는 어떤 곳”, <주간조선 2061호>, 2009.6.29.

“개성시 고려청자 밀매매자 무기징역”, <오늘의 북한소식 284호>, 좋은벗들, 2009.6.23

김광인, “내부단속 강화 ‘교방검열’ 실시”, <조선일보>, 2002.4.17.

김덕홍, “北반체제 단체들 공개활동”, <경향신문>, 2004.8.5.

김승련, “남북통일비용 50조-670조원 들것”, <동아일보>, 2005.6.7.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790호>, 1992.4.9.

<동아일보>, 2006.10.13.

문성규, “北노동당 중앙위, 위폐유통 단속 지시”, <연합뉴스>, 2006.5.3.

박진, “통일후 북한주민 얼마나 넘어올까?”, <매일경제>, 2004.6.12 18면.

“北 ‘6군단 쿠데타모의사건’ 아시나요?”, 테일리NK, 2005.1.22.

“북한의 마약밀매”(koreascope: <http://www.koreascope.org/tt/northkoreatoday/search/국제범죄>), 2006.8.16.

북한 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연구팀, “북한의 일권실체 4, 노동단련대”, 『자유공론』 2009년 2월호, 한국자유총연맹.

사단법인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마약 거래 단속 강화”, <오늘의 북한소식 제57호>(http://www.goodfriends.or.kr), 2007.3.16.

_____, “술한 단속에도 한국 영화 열풍 확산”, <오늘의 북한소식>, 2007.2.28.

_____, “10월부터 시장 판매 금지 물품 공고”, <오늘의 북한소식 44호>, 2007.2.12.

_____, “외화벌이 회사 일대 검거 선풍”, <오늘의 북한소식 제43호>, 2006.11.1.

_____, “외화벌이 회사 일대 검거 선풍”, <오늘의 북한소식 제62호>, 2007.3.7.

_____, “자동차 충전지 절도사건 빈발”, <오늘의 북한소식 제62호>, 2007.3.7.

- _____, “7월의 비사그루빠 활동”, <오늘의 북한소식 제1호>, 2006.09.16.
<연합통신>, 2004.7.10.
- “5인조 제대군인 강도 공개처형”, <오늘의 북한소식 제262호> 2009.1.20).
- 이영화, “北 개척 밀수망, 거꾸로 김정일 덮친다”(데일리NK), 2005.4.20.
- 장용훈, “北사회 마약으로 신음”, <연합뉴스>, 2006.6.8.
- _____, “北 포고령 ‘마약 생산·수출·거래 최고 사형’”, <연합뉴스>, 2006.3.18.
- 전우택.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 <조선일보>, 2007.4.9.
- “제대군인 범죄조직 대거 검거 열풍”, <오늘의 북한소식 56호>(http://www.goodfriends.or.kr),
2007.3.16.
- 주성하, “히로뽕에 찌든 북한... 20, 30대男 5%이상 투약”, <동아일보>, 2006.9.30.
<조선일보>, 2003.2.17/ 2006.8.18.
- 최이락, “북한에 각성제 공장 최소 3곳 <요미우리>”, <도쿄=연합뉴스>, 2007.3.17.
- “평성, 불량 녹화물 집중 단속”, 좋은벗들, 2009년 11월 3일자.
-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 “김정일, 공개총살 ‘3중효과’ 노린다”(데일리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353), 2005.3.21.
- _____, “김일성 유적지서 反김정일 배라 뿌려져”(데일리NK), 2006.2.17.
- _____, “함흥 대극장 김정일 비난 구호사건 있었다”(데일리NK), 2006.2.2.
- The Daily NK 특별취재팀, “반체제 활동, 함경도 등 국경지역 집중”(데일리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1255), 2005.1.17.
- BundesKriminalamt, PKS 2000, in http://www.bka.de/pks/pks2000/p-2-1-1.html
http://terms.naver.com/item.php?d1id=8&docid=41, 2006년 4월 19일 검색.

책임연구보고서 2009-31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발행일 : 2009년 12월 24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